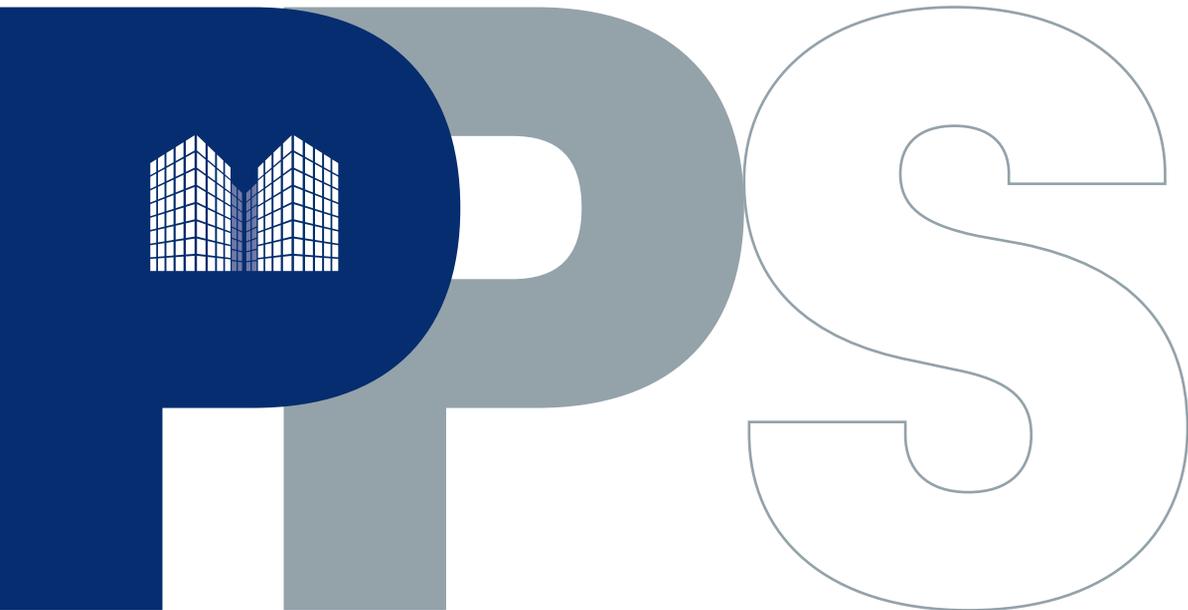


2023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Public Procurement Service



Contents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I 나라장터 종합쇼핑몰(MAS) 개선

가.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06
나. 다수공급자계약 운영제도 개선	09
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합리화	17
라. 종합쇼핑몰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20

II 혁신제품 제도개선

가. 도입확대 및 편의성 제고	26
나. 혁신제품 시범사업 확대운영	31

Public Procurement Service



III 기술개발 및 벤처기업 등의 우대제도 개선

가. 우수조달물품 제도개선	36
나. 창업·벤처기업 등의 우대제도 개선	39

IV 공사제도 합리화 및 편의성 제고

가. 시설공사제도 합리화	46
나. 시설공사 입찰의 편의성 제고	50

V 물품·서비스·SW의 공공입찰 개선

가. 물품 구매제도의 합리화	56
나. 서비스·건설용역 관련 규제혁신	57
다. 소프트웨어·디지털서비스 분야 개선	61

VI 심사평가 및 품질검사 분야 규제혁신

가. 입찰 심사·평가 제도개선	68
나. 품질 및 검사 분야의 편의성 제고	71

VII 시스템·물품목록 등 기타 규제혁신

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78
나. 공공물품 목록제도 및 절차 개선	81
다. 기타 규제혁신	83

VIII 부록

조달현장 규제혁신과제 색인	88
----------------	----



I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MAS) 개선

가.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06
나. 다수공급자계약 운영제도 개선	09
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합리화	17
라. 종합쇼핑몰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20

I 나라장터 종합쇼핑몰(MAS¹⁾) 개선

가.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1.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혁신조달운영과, ☎ 7530)

- 현황** 수요기관이 혁신제품 구매를 원하는 경우, 현재 업체·수요기관이 매번 계약을 체결해야 해 비효율적이고 거래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개선** 혁신제품 단가계약 시범 도입으로 혁신제품을 종합쇼핑몰에서 편리하게 구매하도록 해 혁신기업의 판로 지원 확대
 - *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기간: ~'23.12.31)해 확대 여부 검토
 - 신생업체 집중지원을 위해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업체 중 일정요건(혁신제품 시범사업 성공판정 등)을 갖춘 제품 대상으로 선정

조치사항 「혁신제품 지정업체 단가계약 시범사업」 공고(선조치)

| 혁신제품 단가계약 시범사업 도입 전·후 비교

구분	기 준	개 선
절 차	[총 6단계] (규격검토 후) 계약방법 결정 → 나라장터 구매결의 → 가격조사 → 수의시담 → 계약서 작성 → 계약체결	[1단계로 완료] (미리 단가계약) →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혁신제품 선택해서 즉시 납품요구
소요시간	26일*	클릭 1회

* 조달청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기준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21년 기준 15.7조원)

2. 혁신제품 쇼핑몰 등록 시 실적요건 폐지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신규 등록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납품실적 요구

- 하지만, 혁신제품은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

[사례] '의료기기' 품목의 경우, 다수공급자 계약 공고문에서 실적을 요구 중
→ 의료기기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아도 실적이 없으면 종합쇼핑몰 등록 불가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혁신제품에 대한 실적요건 폐지

- 혁신제품 1,574개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 혜택('23.1월 기준)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23년 상반기)

3. 수요자 친화적인 다수공급자계약 규격운영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중 일부 제품은 다양한 규격의 등록 필요

- 하지만, 일부품목(예시 해상부유구조물)의 경우 1,000개 넘는 규격을 등록해 처리 지체 등 문제발생

개선 규격이 많은 특수물품은 구간 단위로 등록·계약하는 제도를 도입해 수요자 친화적으로 제도개선

[예시] 크기비례 상품(5, 6, 7, 8, 9, 10cm)은 1cm별 5개 규격이 아닌 1개 범위규격 (5~10cm)으로 계약 (제조원가에 큰 차이가 없는 범위 내)

조치사항 현장상황을 고려한 '범위형 규격 계약제' 도입 검토('23년)

4.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 개선 검토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 중 '계약이행성실도' 항목에 따라 과거 3년간 부정당제재, 거래 정지 기간에 따라 점수화하여 평가

개선 계약이행성실도 평가 완화 검토(2년간 부정당제재 이력 반영 등)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검토('23년 상반기)

5.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서에 계약연장 허용 등 내용 기재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입찰공고서에 계약연장 관련 내용은 계약연장 유의사항만 안내

- 계약연장 시기가 되면 계약연장 허용여부 및 제출서류를 매번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개선 입찰공고서에 계약연장여부 허용 내용(필요시 계약연장 필요서류 포함) 명시

조치사항 입찰공고서 수정('23년 상반기중 MAS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시행시)

6.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MAS 공급 확대 (쇼핑몰기획과, ☎ 6470)

현황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기·수소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을 단계적 상향('21년 80% → '23년 100%)

- 종합쇼핑몰 저공해차 구매비중이 증가 추세('20년 15.2% → '21년 29.3%)이나, 아직은 내연기관자동차의 구매비중이 높은 실정
- *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21년 2월 관계부처 합동)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신규계약 확대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전기·수소자동차 공급확대

조치사항 신규 전기·수소자동차 출시 시 신속한 다수공급자 계약체결 추진('23년)



나. 다수공급자 계약 운영제도 개선

1. 미리 주문된 납품도 물가변동 납품단가 조정에 반영 (구매총괄과, ☎ 7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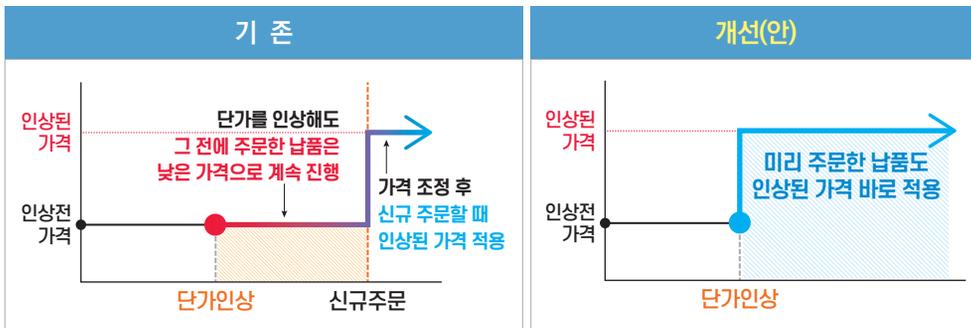
- 현황** 쇼핑물 가격을 물가변동에 따라 인상할 때, 이전에 주문이 완료된 물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상 전 단가로 납품
- 주문과 납품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계약자가 과도하게 부담하는 문제 발생

[사례] 공사용 자재는 공사발주 시점에 주문해 납품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발생

- 개선** 既 주문 제품 중 미납제품에도 물가변동 납품단가 조정 반영
-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장기 납품기한(예. 1년 이상)의 경우에 시범적용

조치사항 시범운영 기준 마련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23년 상반기)

다수공급자 계약 단가조정 적용 개선(안) 비교



2. 미종결 납품요구 취소요청 절차 마련 (구매총괄과, ☎ 7266)

- 현황** 미종결된 기존 납품요구건은 조정 전 단가로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어 원자재 급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 부담
- 개선** 장기 납품품목(예, 2년이상)에 대해서 업체의 주문취소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 마련

조치사항 물가변동 시 미종결 납품요구 건에 대한 취소절차 마련('23년 상반기)

3. 탄력적 계약조건으로 납품업체의 리스크 분담 (쇼핑몰기획과, ☎ 6470)

현황 조달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계약금액, 납품 기한 등 계약조건은 대체로 고정적

- 특히, 최근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속한 계약조건 변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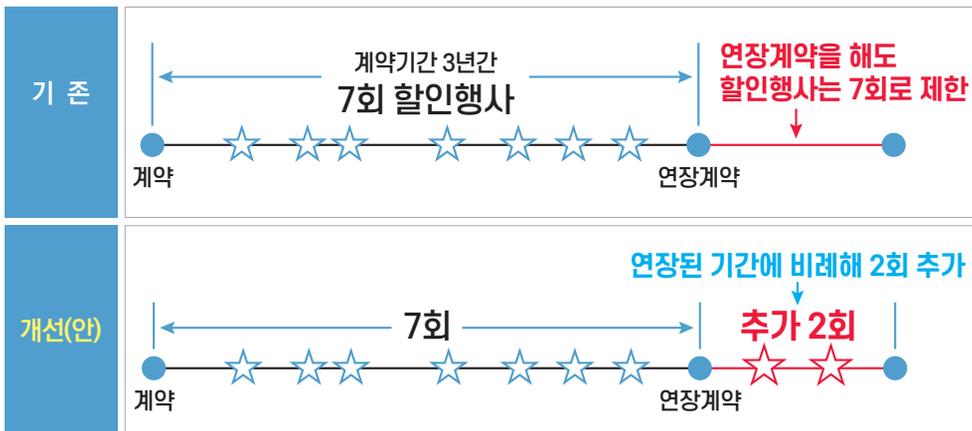
개선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을 150일 → 210일로 연장(선조치)

4. 쇼핑몰제품 할인판매 횟수 추가 허용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쇼핑몰제품 할인판매(일시적 가격인하)는 횟수를 7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할인판매 횟수는 신규계약(재계약) 시에만 갱신

-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기존 할인판매 횟수 갱신 미 허용 → 수요자 편익 증가와 판매자의 선택권을 제약

개선 계약연장의 경우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행사 허용
(예: 1년 연장 시 할인행사 횟수 2회 추가 등)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규정」 개정('23년 상반기)

5.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연장 횟수 제한 해제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납기연장 횟수(2회) 제한으로 장기 공사의 경우 공사일정이 연장되는 경우 관급자재 납품에 문제가 되는 경우 발생

개선 계약기간 내에 횟수 제한없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납기 설정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23년 상반기)

6.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 판매 재개 허용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다수공급자계약은 쇼핑몰등록 후에도 경쟁구조 유지가 원칙

-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의 공급자가 있어야 쇼핑몰 등록 가능
 - 쇼핑몰 등록 후 3인 이상 공급자에서 1인만 남게 된 경우 그 1인은 귀책 유무에 관계없이 3인 이상 등록시까지 판매중지
 - 정당하게 쇼핑몰 등록이 된 이후, 타인의 사유로 인해 단일공급자가 되어 기한 없는 판매중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사례] A사는 생활용탈취제 생산기업으로 생활용과 산업용 탈취제 구분이 없던 종래에는 다수 공급자계약으로 종합쇼핑몰 판매하였으나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조치 강화에 따라 기존 탈취제(47131800)가 산업용탈취제(47131801)와 생활용탈취제(47131802)로 세부품목이 분리되고, 관련 법령상 생활용탈취제(47131802)에만 요구되는 '안전 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충족하는 기업이 1개사 뿐이어서 종합쇼핑몰 등록·판매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

개선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쟁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심사절차 없이 신속한 판매개시 회복*

* (예시) 1개월간의 판매중지 후에 경쟁구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단계 경쟁기준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판매재개 허용하는 방안 등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개정('23년 상반기)

7.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만료일 임박 시점에서의 납품기한은 '계약 만료일 + 표준납품기한 (통상 30일)까지로 일괄규정

- 수요기관의 무분별한 납기연장 요청 방지를 위한 제한조치이나
 - 장기간 납품기한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납품요청의 취소, 신규주문 등으로 수요 기관과 납품업체에 혼란·불편 초래

개선 수요기관·납품업체 협의시 자유로운 납품기한 변경 허용

[효과] 연간 7.8만 건(연간 납품요구 141만건의 5.6%)이 주문변경 없이 연장 가능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23년 상반기)

8.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산정의 합리적 개선 (구매총괄과, ☎ 7302)

현황 유해물질 검출 등의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쇼핑몰 거래정지처분에 앞서 조달기업의 의견 제출기간 동안 판매중지기간 운영 중

* 판매중지 동안에는 쇼핑몰 화면에 상품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 불가

개선 실제 판매 불가능한 판매중지 기간을 거래정지기간에 산입해 중복제재 성격을 갖는 문제 해소

조치사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23년 상반기)

┃ 거래정지·판매중지 사실상 중복제재 개선(6개월 처분의 경우 예시)



9. 쇼핑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경감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동안 법정인증 등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제재 조치

-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자격으로 계약이행을 한 것이라 부정·부당한 계약이행에 해당되어 제재 조치
 - 다만, 납품행위가 없어 수요기관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과도한 측면

개선 경미한 사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대신 제재효과가 덜한 판매중지 후 일정요건*하에서 자격 회복 시 판매재개

* (요건 예)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납품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취소가 아닐 경우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23년 상반기)

10.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규모(거래기업 1만개 사, 연간 15조원)가 커지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과도한 행정소요 유발

* 사전심사 10단계, 적격성평가 7단계→소요일수 평균50일, 길게는 3달↑ 소요

개선 「표준 행정소요일수」를 신설하고 진행현황 조회 서비스 제공

조치사항 「목표행정소요일수(예: 50일 이내)」를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 본격 운용 ('23년)

11.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 절차 자동화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종합쇼핑몰 계약상대자의 일시적 생산중단에 따른 ‘판매중지 요청’을 종합쇼핑몰에 구비하여 편리하게 요청 가능

- 반면, 생산재개에 따른 ‘판매중지 해제’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아 문서 작업과 송수신, 행정처리 대기시간 등 지연 발생

개선 ‘판매중지 해제’를 종합쇼핑몰에 구현하여 신청 시 즉시처리

[효과] '21년 기준, 연간 828건의 판매중지 해제절차 간소화

조치사항 종합쇼핑몰 시스템 개선('23년 상반기)

12. 단가계약 보증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유도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쇼핑몰 등록제품과 같은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

*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 1회 최대납품가능량(납품량×계약單價) × 10%

- 생산능력을 초과한 납품가능량 제시* 시 보증금도 증가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연평균 50억원) 시 실제 큰 금액의 몰수사례 발생

* 1회 최대납품가능량을 최대한 높게 설정해야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사례] 창업 7년차 A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체결 후 **1.7억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관련 인증취소로 계약해지 → **5억원 상당의 계약보증금 몰수**, 부정당 제재대상

개선 전체 계약업체 대상, 1회 최대납품가능량(그에 따른 보증금) 과다 책정 위험 안내 및 수정계약 지원 (선조치)

- 추가적으로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및 국고귀속 기준 완화를 위한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성과] 기업들이 조달청의 안내를 통해 쇼핑몰등록제품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여 252억원의 비용 부담을 완화

- 1만여개사의 1.8만건 계약을 분석 → 계약보증금이 과다한 경우 등 8천건 인하여도 → '22.9~12월 4개월간 약 252억원을 완화 → 연간 약 756억원 경감 예상

13. 쇼핑물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장기화(1년 → 통상3년)됨에 따라 매년 중간점검시 일부 품명은 2개월 ~ 1년내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 혼합골재, 교통신호등 등 16개 대상 매년 중간점검에 의한 시험성적서 요구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시 시험성적서 제출 전면폐지

- 시험성적서가 없어도 최대 3회 납품검사, 조달품질원 정기품질점검 등으로 안전·품질 관리 가능

조치사항 「입찰공고문」 변경·시행('22.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으로 현재 6품목 시행)

- 중간점검을 위한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연간 약 17.5억원* 절감 예상(통상적인 3년 계약기간 기준 52.7억원 절감)

* '22년 해당 기업 351개사에 대한 1년치 추정액(성적서 발급 비용 건당 약 5백만원 감안)

14. 직생유효기간 갱신 후 판매중지 해제절차 간소화 (구매총괄과, ☎ 7302)

현황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판매중지된 경우 갱신 후 업체에서 계약부서에 판매중지 해제요청

개선 판매중지 중인 다수공급자계약물품(중기간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유효기간이 갱신되면 시스템에서 판매중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개선

조치사항 종합쇼핑몰 시스템 개선('23년 상반기)

다수공급자계약(MAS) 운영제도 개선 관련 기타과제

순번	과제명	상세 내용	일정
15	다수공급자계약 직접생산 증명서 만료 시 제재 경감 ----- 구매총괄과 7266	<p>현행 MAS 계약기간 중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시 미종결 건이 없고, 제재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p> <p>개선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판매중지' 조치 후 위반정도(MAS 위반 납품여부, 직생 연관취소여부 등) 및 계약재개 의사 등을 판단 하여 후속조치</p> <p>조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p>	'23.상
16	다수공급자계약 연장요건 명확화 ----- 구매총괄과 7266	<p>현행 계약연장시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여부 판단은 해당 계약에 한해 적용해야 하나 규정이 불분명하여 계약연장이 거부되는 상황 발생</p> <p>개선 계약연장 시 당해계약에 대해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 계약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p> <p>조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p>	'23.상
17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서 및 규격서 재 정비 ----- 구매총괄과 7266	<p>현행 공고서상 필요 서류 목록이 일부만 기재되어 있거나, 계약 대상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적격성평가/협상품목등록 신청 후 보완요청(반려)되는 사례 발생</p> <p>개선 공고시(최초·정정) 공고서·규격서의 내용만으로도 MAS 등록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계약 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전부 기재</p> <p>조치 물품별 구매입찰공고 정정(상시)</p>	상시
18	시스템 장비 물가 변동 적기 반영을 위한 단가조정 주기 단축 ----- 쇼핑몰구매과 7231	<p>현행 물가변동을 적용하기 위한 단가조사 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시장가격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움</p> <p>개선 (시스템장비) 단가조사 주기 단축(2년→1년)으로 물가변동 신속 반영 등</p> <p>조치 시스템장비(배전반, 자동제어, CCTV, 방송장비) 자재단가 조사 후 자재단가 결정 및 원가계산 프로그램 반영</p>	완료

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합리화

1. 지나친 가격경쟁 유발 요소 제거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²⁾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고용우수기업」 → ② 「제안가격(제안율) 낮은 자」 순으로 업체 선정

개선 품질평가 요소를 우선 반영해(예. ① 품질관리* → ② 가격 순으로 평가) 과도한 가격 경쟁을 줄이고 고품질 조달물자를 적기 공급되도록 개선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결과, 결함없는 경우 만점 → 결함정도(경/중/치명)에 따라 감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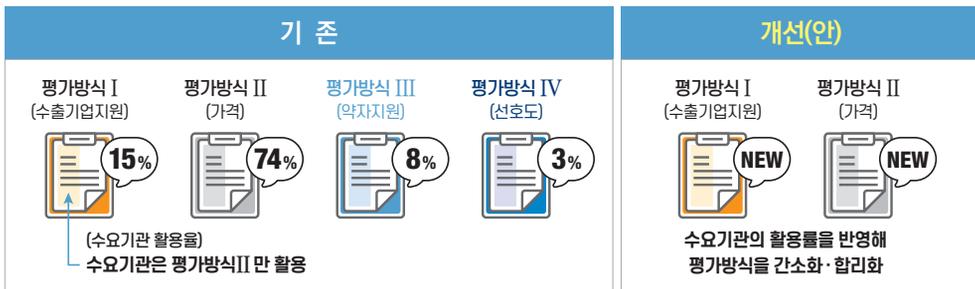
조치사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23년 상반기)

2. 쇼핑몰 2단계평가방식 통합·단순화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위해 4종의 표준평가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은 가격위주 평가방식(II) 선호

• 특정 평가방식(가격) 선호에 따라 가격위주의 출혈경쟁 유발

개선 표준평가방식을 수요기관의 선호 항목과 '품질관리·사후관리'를 반영해 2종의 평가방식으로 통합·간소화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23년 상반기)

2) 5천만원(중기간 1억원) 이상 MAS 물품을 구매시 5개 이상 업체의 품질·가격을 비교·검토

3. 쇼핑몰 2단계경쟁 품질관리평가 감점범위 완화 (구매총괄과, ☎ 7266)

-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품질관리' 평가는 '계약상대자' 기준으로 평가
- * 예컨대, A, B, C 3가지 물품을 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가 A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평가를 받을 때 A제품과 관계없는 B, C의 품질 불합격에 대해서도 감점을 받게되는 구조
 - 업체의 품질관리능력 평가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2단계경쟁 품질검사 미달률은 '15년 10.8% → '20년 1.9%로 지속 감소
→ 징벌적 감점평가를 핀셋평가방식(해당제품 감점)으로 전환 필요
- 개선** 평가대상을 '계약상대자' → '세부품명'으로 완화(감점범위 축소)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개정('23년 상반기)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구매총괄과, ☎ 7266)

-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일부 수요기관이 별도의 조건을 달아 부당한 요구

[사례] 규격, 납품조건 등 변경 사항 요구로 조달기업에 부담

- 개선** 시스템 안내문구를 통해 수요기관이 계약조건 변경 등 별도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내용을 알리도록 시스템 개선('23년 상반기)

[효과] 수요기관에게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 부당한 요구로 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사전 방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합리화 관련 기타과제

순번	과제명	상세 내용	일정
5	다수공급자 계약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제도 개선 검토 ----- 구매총괄과 7266	현행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불공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그 이력을 평가 - 최근 2년간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로 부정당제재 또는 거래 정지 받은 경우 사전심사, 2단계 경쟁 등에 적용중 개선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개선 검토(1년간 이력 반영 혹은 폐지) 조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개정	'23.상
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시 선택평가 항목 변별력 개선 ----- 구매총괄과 7266	현행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시 선택평가 중 지역업체 평가를 선택하고 있으나 변별력 부족 개선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지역업체' 평가시 해당 지역업체와 아닌 업체간 점수차 확대해 수요기관 선택의 폭 확대 * 해당지역: 배점*1(동일), 해당지역X 배점*0.4 ^{개정전} → 0.2 ^{개정후} 조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	'23.상



라. 종합쇼핑몰 편의성 제고를 위한시스템 개선

1.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등 간소화 (전자조달관리과, ☎ 7325)

현황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 서류는 많은 반면 장시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은 시간·비용에 부담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MAS Smart Contract) 시스템을 시범도입해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 (선조치)

* (시범사업)차선분리대 등 3개품명, 16개사 → ('23년)100개 품명 → ('24년)전면확대 (746개 품명)

• 계약기간 평균 ^{개선전}50일 → ^{개선후(재계약)}5일로 단축 예상

* 신규품목 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검토과정이 필요하여 20일 내외 소요 예상

쇼핑몰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서류	종이서류 우편 및 방문 제출	Paperless(외부시스템 연계)
절차	최대 10단계	3단계
소요시간	50일	(재계약) 5일, (신규계약) 20일

2. 물품 계약단가 조정신청 관련 시스템 개선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물가상승에 따라 계약단가 조정신청 관련 상세한 안내나 나라장터의 신청메뉴, 매뉴얼 등이 없어 업무진행이 어려움

개선 나라장터에 계약단가 조정신청에 대한 전용 메뉴 등을 만들고 자세한 사용 방법을 안내·홍보하는 등 기업 편의 제공('23년 상반기)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조정신청 관련 매뉴얼을 사례별로 제작하여 배포

[효과] 기업이 편리하게 계약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해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쇼핑물 주문 로봇처리 프로세스 구축 (전자조달관리과, ☎ 6278)

현황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주문(납품요구)하면 조달청 담당자의 납품요구서 송신과정을 거쳐 주문 확정

-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종합쇼핑물 주문을 조달청 담당자의 관여 과정으로 인해 구매시간 지연, 행정비용 등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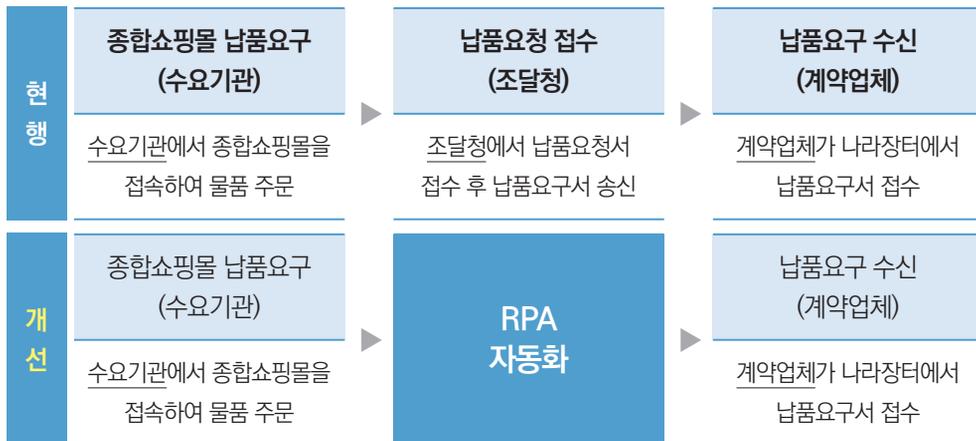
* 쇼핑물 주문 추이: ('19년)1,128,020건 → ('20년)1,321,517건 → ('21년)1,374,464건

개선 조달청 담당자의 관여가 없는 로봇틱 자동처리(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 구축

[효과] '21년 종합쇼핑물 주문에서 접수까지 8시간 소요 → 즉시접수 가능

조치사항 RPA 시스템 구축 (선조치)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 도입



4.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시 첨부파일 오류 개선(구매총괄과, ☎ 7266)

현황 적격성 평가 신청 시 규격서와 인증서를 첨부 후 저장하고 송신하면 첨부파일이 삭제되어 보완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개선 첨부서류 첨부시 즉시 송신하는 등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조치사항 나라장터 쇼핑물의 관련 시스템 개선(선조치)

5.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시 입찰자격 시스템 개선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MAS 중간점검 서류 검토 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유효기간을 첨부서류를 통해 확인중

- 다만, 별도 유효기간 입력란이 있어 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하는 등 업무처리 혼선 발생

개선 중간점검 신청 시 기존업체가 등록한 자료(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신설

조치사항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23년)

6. 대량구매 할인을 적용 금액 표기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종합쇼핑몰에는 단가·수량에 따른 금액만 단순 산출, 대량구매시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반영 요청

개선 할인을 적용하기 전의 가격과 할인을 적용한 예상 가격을 함께 표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조치사항 종합쇼핑몰시스템 개선('23년 상반기)

7.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대상 관련 안내 개선 (구매총괄과, ☎ 7266)

현황 MAS 중간점검 알림 문자가 1년 기한 계약, 이미 해지된 계약에도 발송되고, 계약종료일 도래로 재계약 대상인 건도 중간점검 실시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대상 계약건(계약기간 1년 미만, 계약해지건)에 대하여 중간점검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사항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선조치)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Public Procurement Service

www.pps.go.kr



II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혁신제품 제도개선

가. 도입확대 및 편의성 제고	26
나. 혁신제품 시범사업 확대운영	31

II 혁신제품 제도개선

가. 도입확대 및 편의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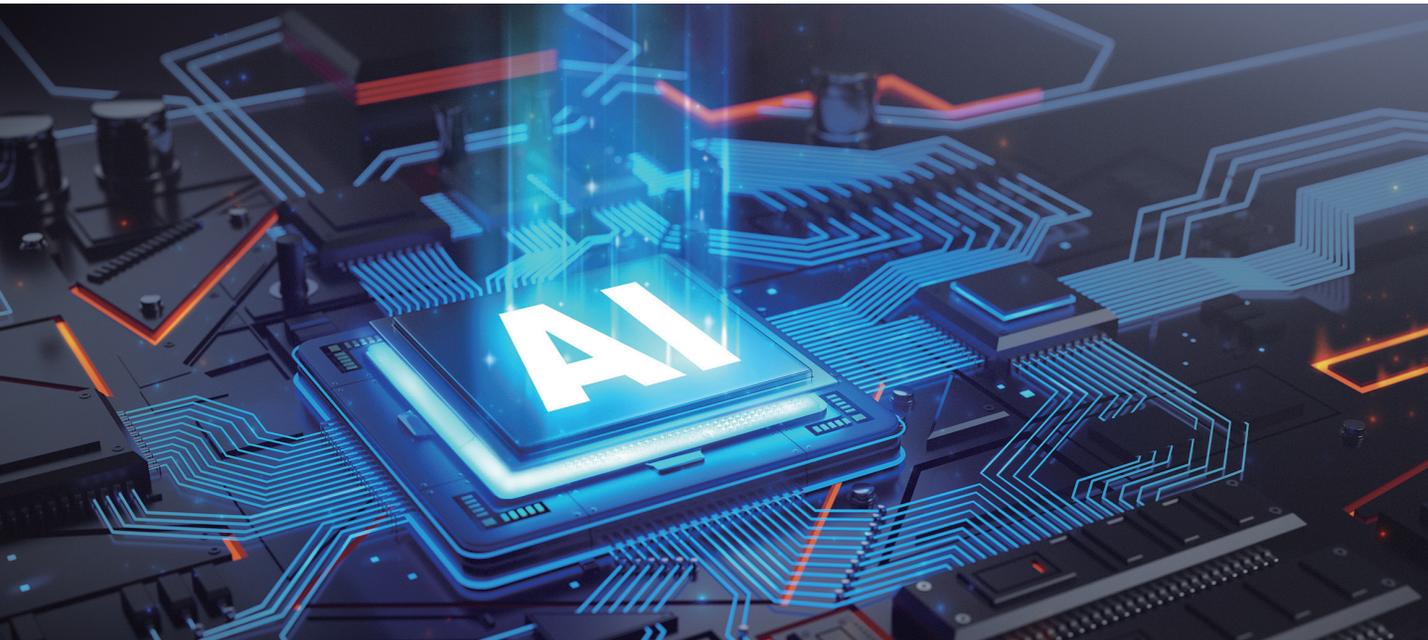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추진 (혁신조달운영과, ☎ 7203)

현황 혁신제품의 경우 최초 3년의 기간 동안 지정하나 초기 1~2년간은 제품 홍보 등에 소요되어 실질적인 납품은 3년차에 집중

개선 공공성 개선 효과, 판매실적(공공+민간) 등을 감안하여 3년의 지정기간에 연장기간을 추가하는 방안 추진

* '23년 기준,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업체 수는 320개(345개 제품)

조치사항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추진('23년, 기재부 협조)



2. 혁신기술을 활용한 우수안전장비 도입 (혁신조달과, ☎ 7238) (혁신조달운영과, ☎ 7564)

현황 소방·경찰·해경·軍 등 고위험 직업군에게 고품질의 장비가 필수적이나 가격경쟁 심화, 인력·예산 한계 등으로 보급 지연

- [사례1]**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특정업체와 단가계약 후 납품받았으나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품질저하 및 검사 불합격에 따른 납품지연 문제 발생(18년)
- [사례2]** 해경 건식잠수복 다수공급자계약(MAS) 추가경쟁 입찰시 업체간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상세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구성품(내피)의 경우 품질 저하 발생

개선 신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안전 장비를 다양한 경로로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일선에 신속히 보급

- * 우수연구개발제품: 기존에 없는 제품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고 이를 혁신제품으로 지정
- * 혁신수요필요제품: 수요기관의 혁신수요를 접수받아 문제를 해결한 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혁신수요필요제품 발굴 진행중인 사례(소방청 사례)

구분	수요기관(소방청)의 혁신수요	혁신제품 발굴방향
소화약제	전기차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배터리 화재 진압에 검증된 소화약제가 없음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약제 중 화재 진압 검증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발굴
웨어러블 로봇	현재 개발된 소방용 웨어러블 로봇은 부피가 너무 커서 보호장비와 동시 착용이 어려움	보호장비와 동시 착용 가능한 소방용 로봇을 발굴해 혁신제품 지정

조치사항 국방부 등 4개 기관에 시범구매를 통한 우수장비 보급예정(23년 상반기)

3.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 절차 마련 (혁신조달과, ☎ 7238)

현황 현행 규정상 특허권자가 다수로 구성된 신산업 기술제품(예, 자율주행자동차)의 신청 규정이 없어 혁신제품 지정에 제한

[사례]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 플랫폼, 장애물 감지 센서, 주행 지도 등 다수 기업이 복합적으로 참여해 제품의 기능을 구현하고 개별 특허를 보유하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다수의 특허권자가 참여하는 제품의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술과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도 혁신제품 지정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

개선 특허권을 가진 다수의 업체 등이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

* 기술권리는 업체간 협정서에 의하고, 제조 능력은 구성원 중 일부가 보유한 경우 인정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개정(선조치)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 개선방안(예시)



4. 혁신시제품 규격 추가 절차 개선 (혁신조달과, ☎ 7203)

현황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규격 이외에는 규격추가 곤란하거나 복잡하고 장기간의 심의과정 요구

- 체계적인 규격추가 절차가 없어 공공수요 충족을 위한 규격추가 곤란

개선 규격추가 절차 신설을 통해 혁신제품 규격추가 수요 대응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선조치)

5. 혁신장터 이용자 편의성 제고 (혁신조달운영과, ☎ 7121)

현황 혁신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혁신장터를 운영 중('20.2월 오픈)이나 기업과 수요기관에서 일부 기능에 대한 불편 호소

* 혁신장터: 아이디어 발굴, 혁신제품 지정·구매가 진행되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 연간 4.9만명 이용중이며 '21년 거래실적은 4천억원

- 혁신제품 규격(기업당 평균 15.2개, 최대 836개) 등록, 기업 정보 수정 등에 대해 매번 조달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기업의 불편 초래

개선 기업과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장터 고도화

- 규격이 수백개인 제품도 쉽게 등록하도록 규격 일괄등록 기능 지원
- 기업 홍보를 위한 기업정보 자유 수정 허용
- 메인화면과 이용자별(국민, 기업, 기관 등) 화면 개선 등

조치사항 혁신장터 고도화 사업 완료(선조치)

6. 혁신제품 규격 변경 시 복잡한 협의회 절차 간소화 (혁신조달과, ☎ 7203)

현황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규격 이외에는 변경이 곤란하거나 복잡하고 장기간의 심의과정 요구*

- 공공수요 충족을 위한 경미한 규격오류 시정 곤란

* 경미한 규격변경 시에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절차 필수

[사례] '비대면 안면인식 출입관리 로봇 키오스크'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A사의 경우 제품 규격서에 치수를 단순 오기하였으나 심의절차 등 변경에 5개월 소요

개선 경미한 규격변경 시 심의절차 간소화

* 경미한 규격변경은 혁신조달기획관 업무심의회로 같음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선조치)

7. 과제 발굴 경로 다변화로 다양한 혁신제품 발굴 (혁신조달과, ☎ 7238)

현황 (인큐베이팅)수요기획(환경), 수요자유(혁신장터 국민제안·재도전과제)를 통해 122개 과제를 구체화하여 제품공모, 6개 혁신제품 지정*

* (수요기획⑤) 노면블록형 경량 태양광발전모듈, LID태보행로시스템, 인공지능 순환 자원 페트 회수 로봇

(수요자유⑥) 노전/후면 번호판 인식 및 단속이 가능한 고정형 CCTV 시스템, 간편한 스마트 절수형 양변기, 블록체인 기반 전자 증명서 및 인정서 발급/검증/관리시스템

개선 수요기획 추진기관 확대와 국민제안시스템 (행안부 도전.한국, 특허청 아이디어로)를 통한 혁신수요과제 발굴경로 다변화

- 조치사항**
1. (수요기획) 인큐베이팅 추진기관 '21년 1개 → '22년 6개
 2. (수요자유) 국민제안시스템 '21년 1개 → '22년 3개로 확대(선조치)

8. 혁신제품 협업기관 지속 확대 (혁신조달과, ☎ 7238)

현황 기술혁신 기업들이 타겟시장의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호소

개선 혁신제품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수요개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부처 간 협업을 지속 확대 노력

* 협업기관 : ('21)환경부 → ('22)국방부 등 5개기관(선조치)

9. 혁신시제품 세부추진 일정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혁신조달과, ☎ 7203)

현황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신청기업이 진행 상황 파악에 애로 발생

개선 혁신시제품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공고 시 세부일정 안내를 통해 기업불편 해소 지원

조치사항 혁신시제품 신청업체가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시 세부추진일정 및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선조치)

나. 혁신제품 시범사업 확대운영

1.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검토 (혁신조달운영과, ☎ 7564)

현황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유도를 위해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시범구매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

개선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효과 제고 검토

- 중소기업 지원 효과, 시범구매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긴급상황(방역, 재난복구 등) 대응, 정책적 지원(국정과제) 등을 위한 확대방안 검토

조치사항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방안 검토(기재부 협의 거쳐 추진)

2. 공공기관의 시범사용 판정기준 객관화 (혁신조달과, ☎ 7530)

현황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정성적 판단기준이 수요기관의 업무부담으로 작용

개선 공공기관의 성능만족도 평가기준을 등급화하여 객관화

* 주관적 지표(업무효율 개선도, 이용자 또는 고객만족도, 제품안전성, 타기관 추천의사)에 대해 등급별 차등 배점을 적용하여 객관화
(ex. 매우만족 20, 만족 16, 보통 12, 불만 8점)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선조치)

3. 혁신제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개선 기회 부여 (혁신조달운영과, ☎ 7530)

현황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를 ‘성공, 보류, 불량’ 3단계로 나누고 ‘보류’ 판정 시 우수제품 우대혜택 미부여 및 단가계약 대상에서 제외

개선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시범사용 결과판정 시 현행의 ‘보류’를 세분화해 ‘보완’과 ‘실패’로 분류

* ‘보완’의 단계에는 기술이나 제품성을 보완해 재시험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

시범사업 결과판정 기준 개선(예시)

구분	성공	보완(신설)	실패	불성실 이행
판정 기준	시범사업 성실히 수행 성능점수 80점 이상 신뢰성 인정	성능점수 50점 이상 신뢰성 추가확인 필요 재시험 필요 등	성능점수 50점 미만 신뢰성 미흡 재시험 부적절 및 포기	시범사업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
↓	↓	↓	↓	↓
혜택 및 조치	우수제품 진입 및 단가계약 혜택	성능개선 후 재시험 (성공기회 부여)	성능개선 유도 (혜택은 없음)	경고 및 제재 등 불이익 부여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선조치)

4. 혁신조달 연계형 R&D지원, 시범구매 예산 증액 (혁신조달과, ☎ 7347)

현황 혁신제품은 제조비용이 높고 관련 예산 한정되어 시범구매에 한계

개선 혁신조달연계형 R&D지원, 공급망 확대 마중물 역할을 위한 시범구매 예산 증액 추진

조치사항 '23년 시범구매 예산 18억원 증액(465억원 → 483억원)(선조치)

5.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매칭 강화 (혁신조달운영과, ☎ 7564)

현황 혁신제품 시범사업을 위한 공공수요 매칭(‘22년 기준 연 5회) 시 업체 신청을 받아 제품 명단을 공개하고 원하는 수요기관이 있는 경우 매칭 성립

* 업체의 매치가능 횟수는 4회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공공수요에 대한 정보는 부족

개선 조달청이 공공수요를 일괄 조사해 적합한 제품을 소개하는 등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선별하고 매칭하기 위해 품목별 홍보 및 마케팅 등 지원 확대

조치사항 '23년 시범구매 계획 마련 시 수요기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제품 선별 매칭 방안 마련(선조치)

6. 혁신제품 시범구매 우대 대상 확대 (혁신조달과, ☎ 7564)

현황 혁신제품 시범구매시 수요매칭 관련 일정 기관을 우대 중(우선순위, 시범구매 규모 등)

- 대상 : ① 혁신조달 관련 기관평가 최우수, ② 탄소중립/감염병 확산 관련 신청, ③ 추가구매 연계가능성 높은 기관

개선 신산업개발제품의 시범사용 희망기관, 전년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우대 대상 추가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선조치)



III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기술개발 및 벤처기업 등의 우대제도 개선

가. 우수조달물품 제도개선	36
나. 창업·벤처기업 등의 우대제도 개선	39

Ⅲ 기술개발 및 벤처기업 등의 우대제도 개선

가. 우수조달물품 제도개선

1. 국산 부품 사용 장려를 위한 규격서 수정 허용 (우수제품구매과, ☎ 7283)

현황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⁴⁾의 기술·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우수제품 규격서의 수정과 변경을 엄격히 관리*중

* 최초의 우수제품 지정기준에 준하는 별도 기술심사(심사위원회 개최 등) 필요

개선 규격서에 포함된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신속한 규격서 변경을 허용해 국산부품 사용 유도

- 외국산 부품을 기업이 직접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산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의 규격서 수정절차 간소화(기술심사 생략)

* 다만, 핵심기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의 단종 등의 사유로 제한

조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23년 상반기)

2. 우수제품 지정일 선택범위 확대 (우수제품구매과, ☎ 7283)

현황 지정기간 시작일을 지정일 혹은 지정일+60일로 선택가능하나 계약 준비에서 계약 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소요되어 현재 60일의 여유기간은 다소 부족

개선 시작일을 지정일과 지정일+120일 범위내에서 60일, 90일, 120일 중 선택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23년 상반기)

3) 성과와 품질 우수한 중기제조물품을 심사를 통해 지정해 수의계약, 종합쇼핑몰 등록 등 혜택 부여 ('22년 공급실적 4조원)

3.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 강화 (우수제품구매과, ☎ 7283)

현황 우수조달물품(96년 도입, 4조원 규모)은 그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조달물자 품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제도의 취지를 살린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

개선 기술 분야 배점 강화, 기술 관련 심사항목 정비, 장기 지정기업 심사통과 점수 상향 등 신규·기존기업 점수 차등 적용 등 우수제품 지정 기준 개선

조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23년 상반기)

4. 납품불이행이 없는 우수제품의 제재 경감 (우수제품구매과, ☎ 7283)

현황 우수제품 기업의 부도·파산·폐업 발생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제재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 중

* 다수공급자 계약은 '15년부터 국고귀속을 하지 않음

개선 부도, 파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납품미이행건이 없는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조치사항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23년 상반기)

5. 성능인증 기반 우수제품 안내 지원 (우수제품구매과, ☎ 7283)

현황 우수제품 품질소명자료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가 제출되는 경우 우수제품의 효력은 변동 없이 유지 가능

* 일부 수요기관이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우수제품 구매를 꺼리는 경우 발생

개선 성능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우수제품의 경우 필요시 필요기관 대상으로 우수제품 지정 효력에 영향이 없음을 안내

조치사항 수요기관 대상 안내 공문 발송(선조치)

6. 신규 우수제품 기업에 대한 홍보체계 마련 (우수제품구매과, ☎ 7283)

현황 과점구조 완화에 공급기업의 수가 중요하므로, 신규진입 희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신규진입기업에 대한 홍보 등 필요

개선 신규기업 맞춤형 상담, 교육 콘텐츠 마련, 쇼핑몰 우선 노출 등

조치사항 신규기업 대상 맞춤형 상담('22.9월, 11월 전시회), 신규 진입업체 종합쇼핑몰 상단 노출 및 교육동영상 제작 게시(선조치)

우수조달물품 제도개선 관련 기타과제

순번	과제명	상세 내용	일정
7	우수제품 재계약 및 협업체 관련 제출서류 경감 우수제품구매과 7283	<p>현행 지정기간 연장으로 인한 재계약시 일반 계약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요구하고, 협업체의 경우 지정신청 시 협업승인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고 1차 심사 통과사실과 관계 없이 협업승인 공문 발송</p> <p>개선 재계약시 기존 계약대비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협업체의 협업승인신청서 제출시점을 1차 심사 이후로 변경</p> <p>조치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p>	'23.상
8	우수조달물품의 수요기관 적극 안내 우수제품구매과 7283	<p>현행 제품의 우수성과는 별개로 여전히 판로에 난항</p> <p>개선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제품홍보(예, 우수제품 의무 구매량 증가, 수요기관에 소개등)</p> <p>조치 우수조달물품전시회 등을 통한 홍보</p>	완료

나. 창업·벤처기업 등의 우대제도 개선

1.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요건 면제 (구매총괄과, ☎ 7302)

현황 공동상표에 기반한 공동사업제품 공급*시, 참여기업 중 일부(1개사 이상)가 일정한 기술·품질인증이 있는 경우만 허용

* 3개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물품·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지명·제한경쟁이 가능한 제도로 NEP, NET, 성능인증, 특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인증을 요구 중

• 시장규모가 적은 소기업·소상공인 업종(예, 인쇄·광고물) 등에 일률적 인증요구는 공동사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

개선 인쇄·광고물 업종의 인증요건 시범 면제*

* 해당업종 인증활용 사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 다각적 검토

조치사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 개정(선조치)

III



2. 장기 존속 여성기업 입찰가점 차별 제거 (구매총괄과, ☎ 7302)

현황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10년 이상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여성기업과 달리 신인도 가점 대상에서 배제*

* 여성기업 신인도 가점 : 존속기간에 따라 3년 미만(0.25점), 3~5년(0.5점), 5~10년(0.75점)

• 반면, 장애인, 소기업·소상공인 등 다른 약자기업에는 존속기간 상한 가점이 없어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개선 10년 이상 여성기업도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5~10년(0.75점)’을 ‘5년 이상(0.75점)’으로 개정

* 신인도 등 입찰가점에 대해서는 전반적 개선 검토중

조치사항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선조치)

[참고: 他여성기업 우대 정책 및 약자기업 정책 방향과의 비교]

-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여성기업 수의계약 등 다른 여성기업 지원 정책에서는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지원혜택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음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등
- 여성기업 지원 대상범위 축소는 약자기업 지원 확대라는 새정부 정책방향과 배치('21.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 등 약자기업과의 소액수의계약 범위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1억원으로 확대)

3. 벤처나라 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간 확대 (혁신조달운영과, ☎ 7121)

현황 벤처나라 제품의 연장신청기간은 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연장신청 가능

* 우수제품의 경우 만료일 1년전부터 만료일까지

개선 연장신청 기간을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로 확대

조치사항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23년 상반기)

4. 벤처나라 제품의 우대방안 검토 (혁신조달운영과, ☎ 7121)

현황 창업·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나라 제품을 지정하고, 전용쇼핑몰 ‘벤처나라’(16.10월)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이 제한적

* '22.11월 기준 2,636개사, 1,273억원을 공급해 기업당 1년 공급 실적은 4,800만원에 불과

개선 초기 기업의 판로확대 추가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조치사항 「국가계약법」 개정 등 기재부와 제도개선 협의('23년 상반기)

5. 약자기업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인도 가점 개선 (구매총괄과, ☎ 7302)

현황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상대적 약자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가점 우대가 없음

* 반면 대·중견기업 대상인 경우는 약자 우대 취지로 중소기업에 가점

개선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동수급체 포함) 대상 신인도 가점 인정

조치사항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개정」(선조치)



창업·벤처기업 등의 우대제도 개선 관련 기타과제

순번	과제명	상세 내용	일정
6	창업·벤처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MOU추진 ----- 혁신조달운영과 7121	개선 농업·SW·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MOU도 확대 조치 농업분야 우수 제품 발굴을 위한 조달청·농진청 업무협약	완료
7	창업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면제 사유 상세 안내 ----- 구매총괄과 7266	현행 적격성 평가 면제여부와 면제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시험성적서, 인증서 면제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여 불필요하게 입력하고 다시 전산 반려 후 다시 제출하는 등 비효율 발생 개선 “신용평가 면제 여부”로 명확히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신용 평가 미발급 업체만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후 면제사유 입력 바랍니다” 문구 추가 조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면제’ 대상임을 명시 및 안내되도록 시스템 개선	완료
8	소상공인 우대 제도의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공공조달 역량개발원 1522	현행 소상공인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필요 조치 소상공인 공공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22.7), 소상공인 맞춤형 계약제도 교육과정 운영(’22.11)	완료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Public Procurement Service

www.pps.go.kr



IV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공사제도 합리화 및 편의성 제고

가. 시설공사제도 합리화	46
나. 시설공사 입찰의 편의성 제고	50

IV 공사제도 합리화 및 편의성 제고

가. 시설공사제도 합리화

1.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개선 (시설총괄과, ☎ 7085)

현황 시설공사의 규모(공사금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해당 등급 업체*에게 대표사 자격의 입찰참가 기회 부여

* 시공능력평가액(업체당 1건을 수주할 수 있는 최대 규모, 매년 건설협회 발표)에 따라 등급부여

• 그런데 등급을 구분하는 등급별 공사금액 범위에 일관성 부족 등 등급에 따른 업체별 공사 수주 기회에 불균형 발생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규제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언급

개선 수주 기회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등급별 공사 현황 및 업계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등급을 구분하는 구간을 조정

조치사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23년 상반기)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 개선(안)

현 행			
등급	공사배정규모(억원)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	~1,200	~6,000
2	1,700~950 (750)	1,200~950 (250)	6,000~1,200 (4,800)
3	950~550 (400)	950~550 (400)	1,200~600 (600)
4	550~400 (150)	550~400 (150)	600~330 (270)
5	400~220 (180)	400~220 (180)	330~200 (130)
6	220~140 (80)	220~130 (90)	200~120 (80)
7	140~고시금액 (≒ 60)	130~고시금액 (≒ 50)	120~고시금액 (≒ 40)

개 선(안)			
등급	공사배정규모(억원)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400	~1,200	~3,500
2	1,400~900 (500)	1,200~700 (500)	3,500~1,400 (2,100)
3	900~550 (350)	700~450 (250)	1,400~700 (700)
4	550~350 (200)	450~300 (150)	700~350 (350)
5	350~220 (130)	300~190 (110)	350~200 (150)
6	220~140 (80)	190~130 (60)	200~120 (80)
7	140~고시금액 (≒ 60)	130~고시금액 (≒ 50)	120~고시금액 (≒ 40)

2. 시설공사 낙찰가에 적정공사비 반영 강화 (토목환경과, ☎ 7069)

현황 시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의 균형가격* 산정시 예정가격의 88%를 초과하는 입찰금액은 제외

* 가격평가 기준으로 입찰자들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계산(균형가격에 근접할수록 높은 점수)

- 당초, 낙찰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으나,
 - 임의적 상한(예정가격의 88%)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점
 - 예산절감 보다는 적정공사비 보장이 더 강조되는 점,
 - 원자재 가격 상승, 안전사고 방지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한 시점

개선 균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의 88%를 초과한 입찰금액 포함

- 소수 업체에 의한 고의적 낙찰률 상승은 기시행 중인 방지책*으로 대응 가능
 - * 20개사 이상시 상·하위 20% 제외, 10~19개사는 상위 40% 및 하위 10% 제외, 10개사 미만의 경우 상위 50%와 최하위 1개사를 제외해 균형가격 산정

조치사항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선조치)

3. 건설공사 기술경쟁 강화를 위한 기술형입찰 내실화 (시설사업기획과, ☎ 7411)

현황 기술형 입찰은 '17년 7조원 돌파 후 업계의 과도한 설계조건 요구로 인한 비용부담, 수요기관의 유찰위험으로 최근 실적 급감

* 기술형 입찰 활성화를 통한 공공건설 조달시장의 기술경쟁 강화 필요

개선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

조치사항 1. 기술제안건수를 축소해 업체 부담 경감 :



2. 전문성(위원간 토론 의무화) 및 공정성(위원 사후평가 제도 개선) 강화(선조치)

4. 설계검토 자문위원 확대 및 공종별 전문분야 운영 (설계예산검토과, ☎ 7429)

현황 환경친화적인 공공건축물 구현 및 건설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검토 강화로 관련 분야 자문위원 정기위촉 필요

개선 설계검토 자문위원 확대 및 공종별 일반분야 외 전문분야 운영

조치사항 1. [안전] 자문위원 위촉(22.5) 안전분야 검토 시행
2. [친환경·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추가위촉, 총사업비대상사업 전체시행(선조치)

5. 상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입찰시 가점기준 개선 (시설총괄과, ☎ 7587)

현황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상 협약기간은 최대 3년에 추가 3년 연장가능하나 입찰시 가점은 3년 한도로 제한되어 장기적인 상생협력 유인효과 저하

* 입찰참가자격 사전기준에 의한 가점 최대 2점

개선 건설공사의 특성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도출됨을 감안 협약기간 연장시에도 입찰 가점 부여

조치사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개정(선조치)

6. 설계검토 내실화 및 자문위원회 운영 개선 (설계예산검토과, ☎ 7245)

현황 설계검토 업무 범위 및 대상 확대, 설계검토 업무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개선 요구

개선 설계검토 전문화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분야 추가,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확대에 따른 설계검토 조정 등 내실화를 위한 업무개선 및 자문위원 자격 다양화 등 운영 개선

조치사항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선조치)

나. 시설공사 입찰의 편의성 제고

1.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표준화 (예산사업관리과, ☎ 7563)

- 현황** 공사자재 가격급등으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요청 급증
- 아울러, 수요기관과 업체마다 검토방식, 요청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검토일수도 꾸준히 증가
 - * '21년 검토대상: 1,938건 1.4조원 / 검토일수: ('19년)60일 → ('20년)67일 → ('21년)85일
- 개선** 표준화된 물가변동 검토요청 양식 마련(22.12월~) → 검토 소요시간을 50일까지 단축 ('21년 기준 85일)
- * 향후 시스템 구축('23년 예상)을 통해 물가변동 검토기간 지속 단축(70일 → 10일 목표)

조치사항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식 및 검토요청 표준양식 개발 및 공개('23년 상반기)

2. 입찰비용 절감을 위한 공사비산정 상세내역 공개 (건축설비과, ☎ 7255)

- 현황** 입찰자는 투찰할 금액의 견적을 산출하여야 하나, 견적능력 부족으로 입찰대행사에 통상 공사비의 2%를 지급하며 견적 의뢰
- 조달청은 중소기업체의 직접견적 역량을 높이고자 입찰공고에 공사비 조사내역서(공종별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를 공개하나 실효성은 미흡
- 개선** 입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⁴⁾) 추가 공개

[효과] 연간 2,300여 중소기업체의 입찰서류 작성 지원 효과(입찰대행 비용 절감)

조치사항 조사내역에 세부공종별 일위대가를 포함하여 입찰공고(선조치)

4) 일위대가: 공종별로 단위(㎡, m³ 등)당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품셈에서 정한 재료할증과 노무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한 단위당 공사비.

3. 주요 시설자재 가격조사 방법 개선 (건축설비과, ☎ 7255)

현황 주요 시설자재에 대한 정기가격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공사비에 적용하고 있으나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은 즉시 반영에 한계

개선 정기가격조사외 수시가격조사(주요시설자재, 월1회)를 추가하고 민간(건설관련 각 협회)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실시

조치사항 가격조사 운영방법 개선(선조치)

4.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 실적증명 간소화 (시설총괄과, ☎ 7350)

현황 건설업역(종합·전문건설업)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자가 낙찰예정자가 될 경우 관련협회 실적증명서 발급 필요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

• 상호시장 진출에 대한 실적은 수기로 신청·확인·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실적증명 신청·발급에 필요한 서류 발생

개선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등)와 나라장터 간 시스템 연결을 통해 상호진출 실적증명의 발급 절차 간소화

[효과]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시간 비용 절감

조치사항 관련협회와 실적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 협의('23년 상반기)

5. 설계도서의 전자방식 제출 허용 (설계예산검토과, ☎ 7429)

현황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인쇄물로만 접수

* 설계설명서,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 우편·인편 송부에 따른 비용 및 소요시간, 인쇄비용 등 발생

* 사업당 70만원 내외 소요되며, '21년 기준 278건 적용시 연간 2억원 상당 소요

개선 설계도서 제출방식을 인쇄물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1단계, '22.10)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 / (2단계, '22.12) 전체 설계도서(선조치)

[효과] 연간 2억 원의 서류 준비 비용 절감 추정

6. 시설공사 맞춤형 업체검색 메뉴 제공 (시설총괄과, ☎ 6147)

현황 시설공사 업체 검색과 관련하여 업체명에 의한 검색만 있을 뿐 다양한 조건에 의한 검색은 불가

개선 기업의 소재지역, 보유면허, 기업구분(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실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입력한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메뉴 제공

* 검색결과에 대하여 시스템을 통한 건적요청 자동연계도 검토

조치사항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 공사업체 조건형 검색 메뉴 신설 제공('23년)

7. 시스템을 이용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자동화 (토목환경과, ☎ 6286)

현황 공사원가통합시스템 내역서의 원가 검토시 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전환 등을 수기 등록하고 있어 사용자 불편

개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활용해 원가계산 과정에서 표준시장단가등록 및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간의 전환을 자동화하여 편의 제고

조치사항 공사원가 통합관리시스템 개선('23년 상반기)

8. 산업재해발생 신고를 위한 모바일앱 구축 (공사관리과, ☎ 7301)

현황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을 감지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수단 필요

개선 산업재해의 위험을 감지 시 현장에서 바로 조업중단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도입

조치사항 안전관리 신고 모바일 앱 구축('23년 상반기)

시설공사 입찰의 편의성 제고 관련 기타과제

순번	과제명	상세 내용	일정
9	나라장터를 통한 시설공사 계약 기술검토 보완 서류 접수 개선 ----- 시설총괄과 7405	<p>현행 공사계약에서 기술검토 보완요청시 EDI상 1회만 가능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 공직자메일 활용중 - 회신 확인 지연으로 소요기간 증가</p> <p>개선 나라장터를 통한 보완자료 접수, 담당자에 대한 알림기능 추가 및 보완요청 횟수제한 삭제</p> <p>조치 나라장터 및 EDI 시스템 개선</p>	'23.상
10	공사계약 입찰내역 작성 프로그램 개선 ----- 토목환경과 7338	<p>현행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4가지 정보를 입찰자가 직접 입력해 사용자 실수에 의한 오류 발생 빈번</p> <p>개선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를 나라장터 정보와 연계해 자동 입력</p> <p>조치 입찰내역 작성 프로그램 개선</p>	완료



V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물품 · 서비스 · SW의 공공입찰 개선

가. 물품 구매제도의 합리화	56
나. 서비스 · 건설용역 관련 규제혁신	57
다. 소프트웨어 · 디지털서비스 분야 개선	61

V

물품·서비스·SW의 공공입찰 개선

가. 물품 구매제도의 합리화

1. 현장소통을 위한 주요 품목별 실무협의체 운영 (구매총괄과, ☎ 7265)

- 현황** 업계 건의 및 수요기관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조달청 주관 간담회를 수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업계·소속단체 별로 소통을 운영해 업계·수요기관 간 의견교환 창구 필요
- 개선** 주요 품목별로 업체, 수요기관,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현장방문·소통을 실시해 품목별로 세부적인 의견 교환 및 애로 해소(선조치)

[효과] 품목별 협의체를 활용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제조·납품현장의 각종 그림자 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개선방안 협의

2. 적격심사 평가서류의 제출기한 일원화 (구매총괄과, ☎ 7302)

- 현황** 적격심사 신청서류 제출기한을 고시금액 기준으로 차등부여
- 개선** 적격심사 서류제출기한을 5일로 일원화

조치사항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선조치)

물품 구매제도의 합리화 관련 기타과제

순번	과제명	상세 내용	일정
3	국방피복류 예정가격 현실화 ----- 국방조달지원과 6324	<p>건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피복원단 비용 및 인건비를 고려하여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적정 원가 반영 필요</p> <p>개선 예정가격 작성 시 적정하게 구매실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적정 구매실례가 없는 경우 원가계산용역을 통해 예정가격을 검토</p>	'23.상

나. 서비스·건설용역 관련 규제혁신

1. 운송용역계약 계약조건 변경 개선 (기술서비스총괄과, ☎ 6124)

현황 조달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계약금액, 납품 기한 등 계약조건은 대체로 고정적

- 특히, 최근 유가 폭등 등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속한 계약조건 변경 필요

개선 유류비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운송용역' 계약은 유류비 변동산정방식*을 새롭게 마련하여 계약금액 조정**(선조치)

* 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실연비에 공인연비 차이를 반영하여 보정한 방식

2. 건설용역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입찰감점 폐지 (건설용역과, ☎ 7578)

현황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과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이력에 따라 신용도 평가 점수를 감점(1개월당 0.2점)

- 입찰질서 유지를 위해 징벌적 목적으로 신용도 감점을 도입하였으나 이중 제재적 소지가 있어 제도별로 지속적으로 폐지

* 물품구매적격심사, 중기간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는 '20년, 우수제품은 '21년에 각 분야에서 既폐지

개선 건설용역에 대한 부정당제재 이력 입찰감점 폐지

조치사항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선조치)

3. 차량임대 서비스 진입요건 완화 (서비스계약과, ☎ 7494)

현황 차량임대서비스는 나라장터 쇼핑몰 참여요건으로 “대여사업용 자동차 700대 이상 보유”를 요구

- 현재 쇼핑몰에 등록된 7개사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렌터카 등 7개사는 대기업 5, 중견기업 2개사이며, 연간 300억원 상당 공급 (1년미만 단기대여 28억원(9.8%), 장기대여 259억원(90.2%))

- 진입요건에 대해 국회,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차량임대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한 진입요건 완화 권고

* 전국 렌터카 업체는 21년말 현재, 1,145개(이 중 대기업·중견기업 29개사)

개선 장·단기 기간에 따른 진입요건 재설정*

현행	변경(안)
700대 이상 보유(장·단기 구분 X)	(단기) 50대 이상 / (장기) 300대 이상

* (단기)전국사업 영위 가능한 법정보유대수, (장기)과거 납품요구량, 민간/공공 비중 등 고려

[효과]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시장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기대
(단기) 0개→1,064개, (장기) 40개 → 123개로 확대

조치사항 입찰공고 수정(선조치)

4.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참가범위 확대 (기술서비스총괄과, ☎ 7133)

현황 폐기물처리 용역 조달요청 시 일부 수요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만 지정하고 ‘폐기물재활용업’은 배제

- 폐기물은 종류·성상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체도 계약이행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를 관행적으로 제외

개선 폐기물 종류·성상에 따라 재활용업체도 입찰참가자격에 포함

조치사항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참가자격 완화 관련 지침 시행(선조치)

5. 건설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간소화 (건설용역과, ☎ 7578)

현황 건설용역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일부 평가항목은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복잡한 측면

개선 PQ기준 상 실효성이 낮고 복잡한 평가방법을 간소화*
 * 기술인 경력평가 시 평가자료 관리기관 발급자료 상 “인정일” 평가 활용 등

조치사항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선조치)

6. 이음장터 등록 확대 및 거래 활성화 (서비스계약과, ☎ 7494)

현황 수요기관과 공급업체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22년 4월)하였으나 이용실적*은 미미해 활성화 필요
 * 1,059개 업체가 14개 분야 2,250개의 이음장터 상품 등록하여, 1.8억원 공급실적 달성 (‘22.10월)

개선 중소 · 창업기업의 이음장터 등록을 확대하고 주요 구매기관 대상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이음장터 서비스 거래 활성화

조치사항 공공기관 설명회 개최(‘22년 7~8월), (소액)이용기관 인터뷰(‘22년 8~9월)실시 (선조치)

서비스·건설용역 관련 규제혁신 기타과제

순번	과제명	상세 내용	일정
7	국민 안전·생활 밀접 분야 서비스 신상품 개발 ----- 서비스계약과 7494	<p>현행 재난구호용 임시주거시설 임대, 자전거 보험 등 신규 공공 수요는 증가하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아 구매 편의 저하</p> <p>개선 공공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신상품으로 개발하여 MAS 또는 카탈로그 계약으로 추진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구매 지원</p> <p>조치 재난구호용 임시주거시설 임대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추진</p>	완료
8	공간정보사업 협상계약 시 차등 점수제 활용 권고 ----- 기술서비스총괄과 6124	<p>현행 '21.7월 이후 도입된 차등점수제(제안서 평가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주어 기술변별력 강화) 활성화 필요 * '21.7.부터 '22.6.현재(약 1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64개 기관에서 154건(약 6,354억 원) 차등점수제 적용</p> <p>조치 활성화를 위한 수요기관 대상 제도 취지, 활용 권고 등 적극적 홍보 실시('22.8월)</p>	완료
9	행사대행용역에서의 불합리한 사후정산요구 방지 ----- 서비스계약과 7494	<p>현행 행사대행용역에 있어 불합리한 사후정산 요구* 등의 관행 * 총액확정계약으로 계약체결 후 전체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요구</p> <p>개선 총액확정계약에서 불가피하게 사후정산을 해야 할 경우 처리 방법 등을 명시</p> <p>조치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지침」 개정</p>	완료

다. 소프트웨어·디지털서비스 분야 개선

1.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요건 완화 (조사분석과, ☎ 8161)

현황 소프트웨어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요건(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을 충족해야 가능

- 그러나, 대표자가 개발자일 경우 대표자 1인으로도 제품생산활동 가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요건은 현실성 결여

☞ “1인 창조기업”⁵⁾의 49.5%(226,788개사, 21년 기준)가 ICT업종 종사

| 1인 창조기업 업종별 현황('21년) |

업종	농·어업	제조업	수리업	ICT산업
업체 수(비율)	2,075(0.5%)	180,025(39.3%)	49,434(10.8%)	226,788(49.5%)

* 자료출처 : '17~'21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개선 소프트웨어제품은 소프트웨어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만으로도 직접생산 인정

조치사항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개정(선조치)

2. 공공 IT·SW사업의 불합리한 과업변경 방지 (정보기술계약과, ☎ 7299)

현황 공공 IT·SW 사업에서 정해진 예산 내에서 과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어 업체에 부담

* 당초 계약시 과업을 불분명하게 제시 후 사업 중 세부 개발 내용을 추가 요청하는 행위 등

개선 계약 변경조건을 명확화해 정당한 대가 지급없이 과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선조치)

[효과] 수요기관은 사전에 과업을 면밀히 검토해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은 안심하고 개발에 전념

5)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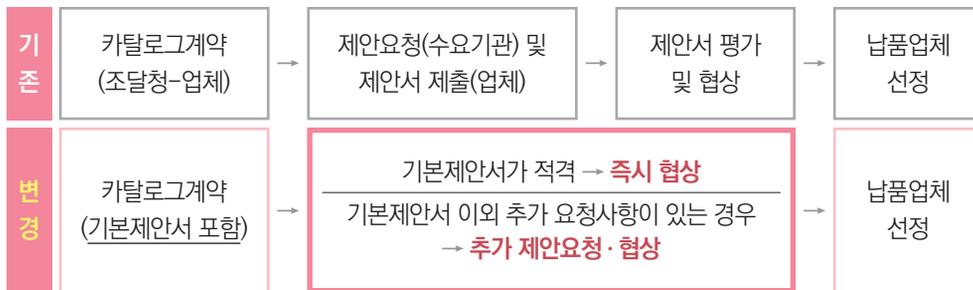
3.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기술서비스총괄과, ☎ 7133)

현황 쇼핑몰에서 디지털서비스 구매를 위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는 쇼핑몰 카탈로그에 이미 있는 내용(개요, 인증, 특징 등)을 관성적으로 요구

* 중복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안서에 담아 작성·제출(연간 537건)

개선 계약 시부터 미리 작성한 ‘기본제안서’ 先 등록 조치 → 기본제안서를 기반으로 별도 추가제안서 없이 평가 실시⁶⁾

디지털서비스 구매방식 개선 전후 비교



[효과] 제안요청에서 협상까지 현행대비 절반으로 단축(평균 9일 → 5일)

조치사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개정(선조치)

6) 수요기관은 기본제안서가 ‘적격’인 경우 즉시 협상하고 기본제안서 이외 추가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안요청 하고, 제안요청의 경우에도 카탈로그 내용과 중복된 사항(개요, 인증, 특징 등)은 카탈로그를 활용하고 최소한의 필수 요건(성능 품질 등)만 제안 요청하도록 개선

4.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3년) 선택방식으로 전환 (기술서비스총괄, ☎ 7133)

- 현황**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서비스계약은 3년 고정단위로 서비스이용료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보증증권) 납부
- 초기 단계인 공공시장수요에 비해 고정된 장기 계약기간으로 인해 계약보증(보증수수료) 부담 증가가 불가피⁷⁾

개선 3년 고정계약 →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으로 변경

[효과] 공급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 형태(장단기)를 고려한 계약기간 및 보증규모 설정

조치사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적용(선조치)

5. 시 기반 SW사업 발주지원 플랫폼 제공 (정보기술계약과, ☎ 7299)

- 현황** 제안요청서 작성시 특정 규격이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SW사업 부실화 및 공공SW사업 현장의 어려움 가중
- 개선** 공공기관이 SW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 기반 발주지원 플랫폼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및 진단 등)'을 제공

조치사항 지능형 발주지원시스템(e-제안요청 도움) 개통(선조치)

7) 디지털서비스 계약보증금 사례: [A 중소기업] 계약금액 3천억, 계약보증규모 30억, 보증수수료 23백만원, [B대기업] 계약금액 2천억, 계약보증규모 50억, 보증수수료 68백만원

6. 상용SW 직접구매 사전검토 업무 전산화 추진 (기술서비스총괄과, ☎ 7133)

현황 SW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상용SW 직접구매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업무 효율성 저하

* 수요기관은 공문을 통해 검토요청, 업무협의는 이메일과 유선으로 진행, 검토결과 공문을 조달요청시스템에 첨부

개선 계약요청 前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검토신청하면 그 처리결과를 나라장터에 바로 연계 하도록 발주프로세스 개선

조치사항 사전검토신청 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예산반영 검토('23년)

소프트웨어·디지털서비스 분야 개선 기타과제

순번	과제명	상세 내용	일정
7	상용SW 등 신규 ICT상품 쇼핑몰 공급 확대 ----- 기술서비스총괄과 7133	<p>현행 개인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공공분야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과학적 행정이 활성화되는 추세 -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 및 공개SW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상품이 디지털서비스몰에 없어 신규상품 확대 필요</p> <p>개선 데이터거래, 공개 SW 등을 공공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공급하여</p> <p>조치 데이터거래(용역 카탈로그계약) 및 공개SW(용역 MAS) 종합 쇼핑몰 등록 추진</p>	'23.상
8	상용SW 직접구매 절차 효율화 추진 ----- 기술서비스총괄과 7133	<p>현행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식별을 위해 디지털서비스몰 및 각종 인증(GS, NET 등) 확인을 위해 각 사이트 방문 및 수기 검색</p> <p>개선 SW 사업 관련 e-발주시스템,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등을 연계해 원스톱 프로세스화 - 직접구매 대상 확인을 위한 지능형 검색 등 신기술을 적용해 SW 직접 구매 업무 효율성 향상</p> <p>조치 상용SW직접구매시스템 구축 추진</p>	'23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Public Procurement Service

www.pps.go.kr



VI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심사평가 및 품질검사 분야 규제혁신

가. 입찰 심사·평가 제도개선	68
나. 품질 및 검사 분야의 편의성 제고	71

VI 심사평가 및 품질검사 분야 규제혁신

가. 입찰 심사·평가 제도개선

1. 조달청 평가위원 수요기관 공동 활용 (기술서비스총괄과, ☎ 6124)

현황 조달청은 자체 보유한 평가위원 풀*을 활용해 수요기관이 요청한 IT·SW사업, 서비스 등의 기술제안서 평가를 수행

* 17개 분야에 4,900여명의 협상계약 관련 평가위원 보유

- 다만, 입찰이 단일응찰로 유찰(→수의계약 전환)되면 단일응찰자의 제안서 적합성 평가(연간 2,000여건 추정)는 수요기관이 직접 진행

→ 수요기관은 평가위원 구성, 평가집행 전문성 부족 등 부담 호소

개선 수요기관에 조달청 보유 평가위원의 공동활용 허용('22.9월)

[효과] 평균 7일이상 소요되는 추가기간 없이 지체없는 온라인 평가 가능

조치사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선조치)

2. 협상계약 온·오프라인 혼합평가 신설 (기술서비스총괄과, ☎ 6124)

현황 온라인 평가 특성상 평가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 평가의 질 저하 우려

개선 평가위원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평가 장소에 집합하여 평가를 진행, 입찰자는 온라인(e-발주지원시스템)으로 발표, 질의 답변을 수행하는 온·오프라인 혼합평가방식 신설

조치사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선조치)

3. 협상계약 시 수혜자 의견 반영한 평가 방식 도입 (기술서비스총괄과, ☎ 6124)

현황 행사용역, 실물모형 등에는 기술평가뿐만 아니라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주민 또는 이용자 등이 참여하여 평가할 사항이 있을 수 있음에도 근거 조항 미비, 평가방법 부재 등으로 의견 수렴에 한계

개선 분야별 사업의 목적, 내용 등에 따라 주민 또는 이용자 등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참여평가* 근거 신설

* 전시물 배치, 공간 활용성 등 선호도 투표 등

조치사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선조치)

4.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계약과, ☎ 7494)

현황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의 제안서에 기술된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 등을 상대방의 동의나 대가 지급없이 수요기관이 임의로 해당 계약에 활용 하는 부당한 사례 발생

개선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타 업체의 제안서를 수요기관에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지식 재산권 사용을 허가받고 관련 비용을 지급

조치사항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지침」 개정(선조치)

5. 행사용역 분야 안전·재난관리 항목 평가 확대 (서비스계약과, ☎ 7494)

현황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평가항목을 조달청 평가(10점 이상)에서 강제 적용

개선 조달청 제안서평가에서만 적용되던 안전 재난관리 항목을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에도 의무적 적용하여 안전 재난관리 항목 평가 강화

조치사항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지침」 개정(선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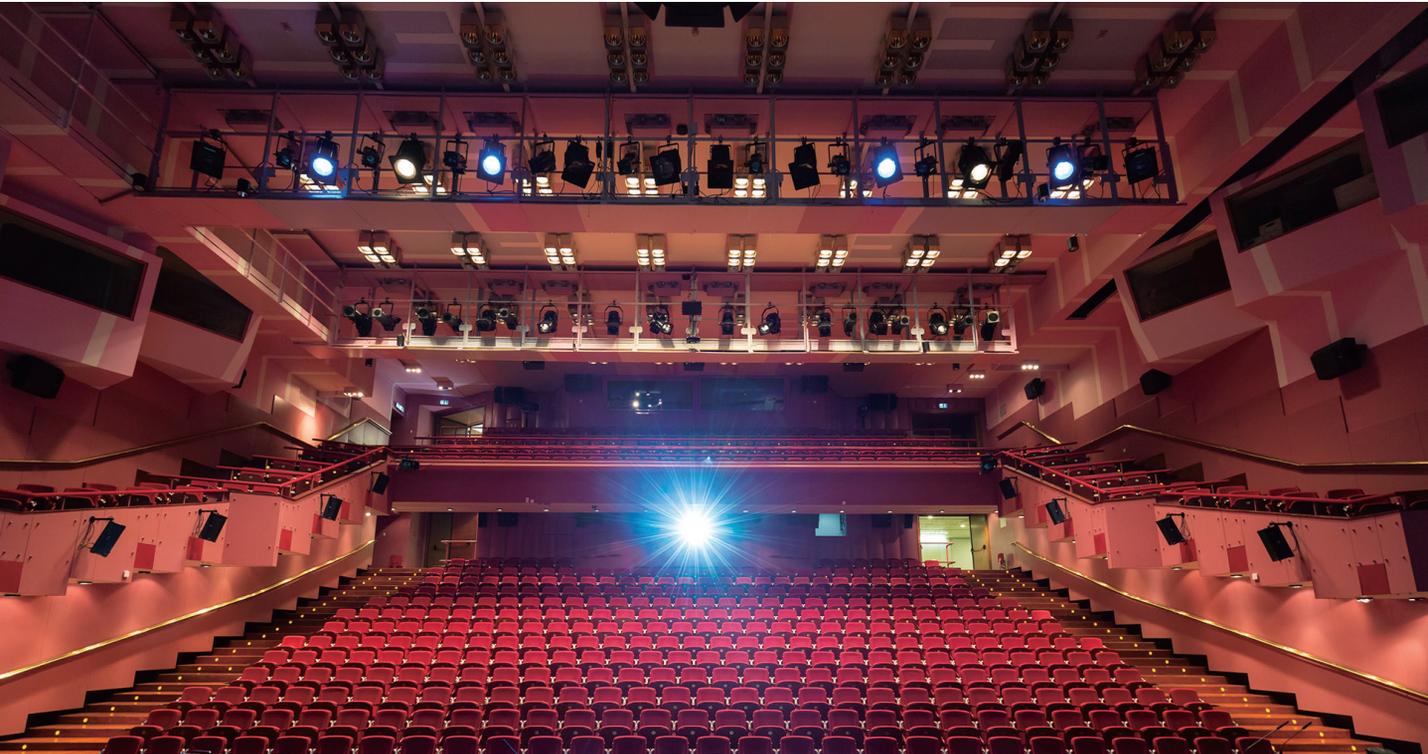
6. 전시문화 사업 평가 시 기술등급평가로 개선 (기술서비스총괄과, ☎ 6124)

현황 전시문화(실물모형)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고 기술력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므로 기술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필요(협상계약 분야)

개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실물모형 분야에 기술능력 평가기준 (기술등급평가*) 신설

* 기술신용평가업체가 기술인력, 보유기술, 기술개발실적 등을 종합 평가

조치사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선조치)



나. 품질 및 검사 분야의 편의성 제고

1. 도서지역 납품검사 방식 현실화 (납품검사과, ☎ 8100)

- 현황**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납품검사를 받는 환경이 열악
- 의무적으로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납품(예, 석재제품)의 경우
 - 전문검사기관이 내륙에만 있어 왕복 항공택배로 부담 등 검사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과다*
 - * 전문기관검사 품목 지정시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
- 개선** 제주·도서지역 소재 등으로 전문검사기관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 허용

조치사항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선조치)

2. 직접생산 위반여부 판단 시 시정기회 부여 (조사분석과, ☎ 8161)

- 현황** 직접생산확인 시 기업이 제출한 자체기준표와 실제 생산방식 일치여부로 판단하나, 기준표 단순오기 등 경미한 불일치에도 위반 판단

[현장사례]

A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식료품절단기를 판매하였으나, 단순한 서류의 작성 오기로 당초 신고한 생산과정(설계, 절단 등)과 달리 일부 공정만 수행하고 있어 계약해지와 계약보증금(약 4천만원) 국고귀속 조치

- 개선** 경미한 위반(자체기준표 단순 오기, 생산방법 미갱신 등)의 경우 제재없이 시정기회 부여(실제 직접생산 여부만을 확인)

조치사항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선조치)

3. 납품검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 확대 (납품검사과, ☎ 8100)

현황 납품검사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시료의 손상, 공인·자체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 등) 확인(재)시험 요청이 가능

- 재시험 대상 및 비용부담 주체 불명확, 시험절차 모호 등으로 실제 확인시험 허용에 제약*

* 확인시험 도입('20.7월) 이후 불합격 120건 중 재시험 요청 10건.

개선 확인시험 요청 범위·절차, 시험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화

	기 존	개 선(안)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시험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 또는 자체시험 결과가 당초와 다른 경우 • 시험과정에서 시료가 손상된 경우
	개선사항 모호한 확인 시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이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해 확인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 → 확인 시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 조달청이 확인시험의 필요성을 전문기관과 협의 → 1회에 한해 시험 요청
	개선사항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악용을 막기위해 1회로 제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를 제기한 자가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의 시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전문검사기관이 부담
	개선사항 기업의 일방적 부담을 방지	

조치사항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운영규정」 개정(선조치)

4. 규격미달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납품검사과, ☎ 8122)

현황 납품검사 불합격제품이라도 사용상에 문제 없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른 납품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감가)조건으로 납품 허용

- 다만, 섬유·피복·제화류 제품에 제한적으로 운용(최근 3년간 할인(감가)조건으로 납품을 허용한 것은 97건에 불과)

- 개선**
- ① 할인조건 납품 허용을 지류, 금속울타리, PVC·PE로 확대
 - ② 할인조건 대상 지정 전이라도 긴급한 행사나 복구공사 등에 허용

조치사항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정(선조치)

5. 창업·벤처기업의 직접생산 협업 대상 확대 (조사분석과, ☎ 8161)

- 현황**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제조업체에 한정하여 협업체 구성 허용*
- * 데스밸리 기간을 거치면서 폐업 등으로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한 조달시장 진입 허용
 - 최근 기술개발제품(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등)의 협업생산에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개선 창업·벤처기업의 생산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효과] 중견기업 중 협업이 가능한 제조업체는 1,977개사('20년 기준 산자부)

조치사항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선조치)

6.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선납품(후검사) 제도 확대 (납품검사과, ☎ 8100)

- 현황** 조달물자는 납품검사 합격 후에 납품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재해·사고, 긴급행사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선납품 허용하지만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
 - * 선납품은 조달청 직접 납품검사 대상제품(가구류 등 이동 가능 제품)에만 허용
 - * 납품검사가 전문검사기관 대행으로 지정된 품명은 선납품 불허

개선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도 긴급수요에 대해서는 선납품 허용*

- * 단, 검사결과 불합격 시 대체납품 등 후속조치가 가능한 제품에 한정

조치사항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개정(선조치)

7. 직접생산 생산주체 자체기준 명확화 (조사분석과, ☎ 8161)

현황 직접생산요건 충족여부는 제조입찰 참가자격이나 정당한 계약이행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

- 현행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서식은 작업주체(자체 또는 외주)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 등이 없어 직접생산 확인 시 혼선 초래

개선 ① 생산공정 중 외주허용 가공·검사 공정에 대한 작업주체(자체 또는 외주) 구분
 ② 외주업체 생산시설을 제외하고 제조등록 업체에서 실제로 보유·임대한 생산 시설만 명기

[효과] 직접생산 확인서류(연간 32,000건) 오류 제거 및 제재 사유 발생 가능성 감축

조치사항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개정(선조치)

현행	개정(안)
-----------	--------------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품명별)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품명별)

2. 제조(생산) 공정 및 생산시설

생산공정 ^⑧	작업 순서 ^⑨	공정내용 ^⑩	생산시설 ^⑪	비고 ^⑫
제품설계				
자재입고				
가공 (조립포함)				
검사				
포장 및 출고				

2. 제조(생산) 공정 및 생산시설

생산공정 ^⑧	작업주체 ^⑨		작업 순서 ^⑩	공정내용 ^⑪	생산시설 ^⑫	비고 ^⑬
	자체	외주				
기획·설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재입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공 (조립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검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포장 및 출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품질 및 검사 분야의 편의성 제고 기타과제

순번	과제명	상세 내용	일정
8	농공단지 수의계약 일반 제조물품 공장 실사 완화 ----- 구매총괄과 7302	<p>현행 농공단지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자격확인을 위한 공장실사와 관련, 중기간 경쟁물품은 필요시에 공장실사하고 있으나, 일반 경쟁물품은 필수적으로 공장 실사 후 계약추진 * (13년 개정시 이원화 사유) 당시는 일반물품의 제조등록시 서류심사만 진행 ** (현재) 일반물품의 제조등록시 조달청에서 공장, 시설, 인력, 공정 등 확인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p> <p>개선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일반물품도 필요시 공장실사 할 수 있도록 완화</p> <p>조치 농공단지 수의계약업무처리지침 개정</p>	'23.상
9	전문검사기관별 검사실적 편차 해소방안 마련 ----- 납품검사와 8100	<p>현행 검사실적이 일부 기관에 편중되는 품명* 중심으로 조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사실적 집중 원인 파악 및 해소방안 마련 * 콘크리트블록의 경우 7개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지만 '21년도 해당 품명 검사의 90.1%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수행</p> <p>개선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 계약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검사기관 관련 요청정보에 대한 제공</p> <p>조치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p>	완료
10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 품질총괄과 8021	<p>현행 안전관리물자 규격미달 등 불합격시 사후조치로 해당물자 소관부처에 품질점검결과 등 통보가 가능하나 해당 인증기관 통보규정이 없어 사후관리 미흡 지적</p> <p>개선 안전관리물자(인증제품)가 부적합 또는 규격미달로 품질점검 불합격시 소관부처 및 해당 인증기관 통보 근거 규정 마련</p> <p>조치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p>	완료
11	조달물자 품질 향상을 위한 MAS·우수 조달물품 표준규격 정비 ----- 품질점검과 8062	<p>현행 MAS 및 우수제품의 표준규격서가 없어 계약 및 품질관리 어려움</p> <p>개선 규격 표준화를 통해 품질 대비 부적정한 조달물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차단하고 물품의 최소 품질요건을 제시해 품질확보</p> <p>조치 표준규격서 정비</p>	완료



VII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시스템·물품목록 등 기타 규제혁신

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78
나. 공공물품 목록제도 및 절차 개선	81
다. 기타 규제혁신	83

VII 시스템·물품목록 등 기타 규제혁신

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1.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서비스 이용 선택 자율화 (전자조달기획과, ☎ 7516)

현황 나라장터는 이용자PC의 해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조달업체에 ‘안전입찰서비스’⁸⁾를 제공하고 이용을 의무화

- 반면, 사설 백신프로그램과 충돌 등으로 신속한 입찰에 방해가 되어 안전입찰서비스 이용 예외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

* 예외신청건수: (‘19) 70,952 → (‘20) 74,749 → (‘21) 75,702 → (‘22상) 76,009

개선 안전입찰서비스 이용을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

[효과] 1회 접속 시 평균실행시간 20.1초 소요, 입찰참여 22만 시간절약

* 22만 시간 = (39,323,908(21년 투찰건수) * 29.1초/3,600)

조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선조치)

2. AI 챗봇을 이용한 고객 응대서비스 제공 (차세대나라장터추진단, ☎ 6344)

현황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문의가 많으나 콜센터의 응대 자원이 한정적이고 시스템상 안내 등의 일방적 전달 수단은 이해가 어려움

개선 AI 기술을 이용한 챗봇 서비스를 구축해 사용자의 초기 및 단순 질의·응답을 채팅을 통해 대응하고 난이도 높은 안내는 콜센터로 연계(‘23년)

[효과] 1실시간 및 24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챗봇 응대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 동시 제고

8) 이용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PC 또는 웹 브라우저를 가상화하는 SW

3. 기업의 실적증명서 온라인 전송 서비스 확대 (전자조달관리과, ☎ 7325)

현황 조달기업들은 매년 계약실적을 유관 협회*에 신고('22년 107만건)

* 입찰참가자격 여부와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실적 취합 목적

-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계약 실적증명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4개 협회로 제한

* 연계가 되지 않은 협회로는 기업들이 일일이 실적증명을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온라인 연계·전송 서비스 대상 협회를 4개에서 8개로 확대

- 연간 30만건 이상의 협회제출 업무를 수기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구분	기존	개선
연계대상 단체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정보원,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존 4개 단체 +]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문화재수리협회, 소방시설협회
	총 4개	총 8개

조치사항 계약실적 온라인 전송서비스 개선(선조치)

4. 동영상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나라장터 안내 (차세대나라장터추진단, ☎ 6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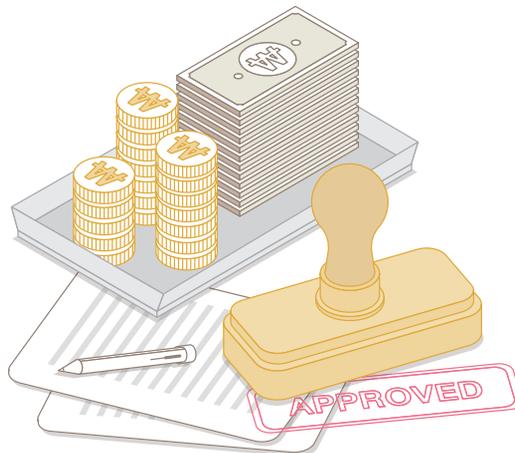
현황 나라장터를 처음 사용하는 업체 및 기관의 경우 용어 등의 단순 지식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단순 문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필요

개선 매뉴얼·문서 안내에 더하여 동영상 등을 통해 나라장터 업무 안내('23년)

[효과] 이해하기 쉽고 접근성이 높은 스트리밍 SNS(유튜브 등)를 활용해 초기 이용자의 나라장터 진입문턱을 낮추고 피드백(댓글 등)을 통해 의견도 수렴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기타과제 】

순번	과제명	상세 내용	일정
5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 단순 실수 방지를 위한 안내 개선 ----- 구매총괄과 7302	<p>현행 국가계약법 적용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적격심사 자료는 최초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p> <p>- 첨부목록에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만 보완 요청 가능하여 최초에 서류 제출이 미비하면 추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p> <p>* 지방계약법에서는 제출서류 미비, 오류, 미제출로 인한 적격접수 미달자에게 1회에 한해 서류 보완 및 추가 기회 제공</p> <p>개선 관련 서류제출의 유의사항을 팝업창에 공지해 실수 방지</p> <p>조치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p>	완료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 구매망 정보의 조달청 입찰등록 연계 ----- 조달등록팀 7061	<p>현행 물품관리과가 중기간 물품의 정보를 변경(세부품명번호 신설·변경 등)하면 변경정보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전달되어 바뀐 정보가 조회되지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정보는 자동 반영되지 않고 업체가 변경신청하여 처리</p> <p>개선 물품분류가 단순변경된 경우 업체 입찰편의를 위해 조달청이 등록된 물품정보를 일괄변경</p> <p>조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개정</p>	완료



나. 공공물품 목록제도 및 절차 개선

1. 긴급 수요물자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 도입 (물품관리과, ☎ 7174)

- 현황** 쇼핑물등록 등을 위한 조달계약은 사전 물품목록취득이 필요
- 물품목록번호(해당 상품의 규격·특성·제조사 등의 정보를 숫자로 나타낸 것)는 6단계 과정을 통해 발급(평균 10일 소요)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방역물자(자가검진키트, 방역용마스크 등) 조달과정에서 물품목록 소요 단축 필요성 제기
- 개선** 긴급수요물자의 물품목록화를 6단계 → 3단계로 간소화
(상품목록심의회, 입찰참가자격등록, 순서대기는 생략 조치)

긴급수요물자 등록절차 개선 전·후 비교



[효과] 최대 9일의 소요시간 단축 가능

조치사항 「목록화지침」 개정 및 상품정보시스템 개선(선조치)

2. 목록화 절차 간소화 (물품관리과, ☎ 7174)

현황 목록화 요청시 입력항목이 많아 필요한 정보의 입력까지 부실하게 입력하는 사례 다수 발생

개선 입력항목 중 활용도 및 입력비율이 낮은 항목* 삭제

* (예시) 최초생산년도, 바코드 번호 등

조치사항 목록정보시스템 개선(선조치)

3.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변경 절차 단순화 (물품관리과, ☎ 7174)

현황 종합쇼핑몰 등록 품목 중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조달업체가 계약부서에 상품정보 변경을 요청한 후 목록정보시스템으로 품목변경 요청

개선 조달업체가 목록정보시스템으로 품목변경을 요청하면 물품관리과에서 계약부서에 상품정보 변경 검토 요청

조치사항 목록정보시스템 개선(선조치)

4. 조달현장에 맞는 물품 목록체계 도입 (물품관리과, ☎ 7174)

현황 쇼핑몰 등록 등을 위한 조달계약은 사전 물품목록번호 취득 필요

- 물품목록번호는 UNSPSC 분류체계에 따르고 있으나 국내 실정이 맞지 않을 경우 업체는 입찰품목 등록 시 혼란·지연 초래*

*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의 경우 UNSPSC(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 Services Code)에 의하면 '무역전시회'가 아닌 '사육제 및 박람회' 하위로 분류

개선 UNSPSC 분류가 국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와 다를 경우 신규 분류를 과감하게 추가

조치사항 목록화 지침 개정(선조치)

다. 기타 규제혁신

1. 수출유망기업 재지정시 단순변경은 실태조사 면제 (조달수출지원팀, ☎ 6451)

현황 수출 유망기업(G-PASS) 재지정 심사 과정인 현장실태조사의 불합리성 노출
 • (현장실태조사) 재지정시 서류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 사항(예, 업체명·대표자명 등) 전수 현장조사 실시

개선 ① ODA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② 서류만으로도 기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장실태조사 생략
 • 실적증명의 전자적 제출을 위해 관계기관과 시스템 연계도 추진

조치사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관리 규정」 개정(선조치)

2. 수출유망기업 ODA사업 수행실적을 심사에 포함 (조달수출지원팀, ☎ 6451)

현황 수출유망기업 수출실적 심사기준은 해외에서 발주한 사실증빙을 통한 외화실적만 인정

개선 대한민국(국내)이 발주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실적을 수출유망기업 지정 심사 평가기준에 포함

조치사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관리규정」 개정(선조치)



3. 비축재고를 탄력 운영해 원자재 필요기업 지원 (원자재비축과, ☎ 7032)

현황 조달청이 운영하는 비축사업(비철금속 6종 등 24.9만톤)은 품목별 안전재고 기준을 두어 일정량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

* 비축물자 재고는 ① 전쟁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재고와 ② 평상시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재고로 구분해서 운영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때에는 기업 방출 요청은 많지만 적정재고 확보가 어려워 재고 유지를 위해 기업 지원을 중단하는 상황 발생

개선 단기적 공급장애 발생 등 수급불안 시 안전재고 일부 물량을 탄력 운영해 방출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 지원

조치사항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개정(선조치)

4. 해외조달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 축소 (해외물자과, ☎ 7311)

현황 해외조달(외자입찰) 시 입찰자가 '해외공급자증명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까지 제출하지 못해 입찰무효 처리되는 사례 빈발

* 외자입찰시 해외 공급자가 입찰자와 함께 계약 이행을 책임진다는 약속서

• '해외공급자증명서'는 안정적인 공급선 없는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징구하나 제출기한이 촉박

개선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늦추고 제출대상은 축소

구분	현행	개선
제출기한	• 입찰단계(→ 입찰서 제출마감일)	• 낙찰단계(→ 낙찰자 확정 전)
제출대상	• 모든 입찰자	• 낙찰예정자 1인

[효과] 연간 2억원(2,000건*10만원)의 서류 준비비용 절감 추정

조치사항 입찰공고서에 반영(선조치)

그 밖의 규제혁신 과제

순번	과제명	상세 내용	일정
5	<p>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희망가격 정보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p> <p>우수제품구매과 7228</p>	<p>현행 우수조달공동상표의 경우 총액계약 방식으로 쇼핑물에서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요기관에 가격 정보 제공 필요</p> <p>개선 희망가격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p> <p>조치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시스템 개선</p>	'23
6	<p>조달수수료 장기 미납 시 '선납 기관 지정제도' 개선 검토</p> <p>조달회계과 7048</p>	<p>현행 3개월 이상 미납기관은 선납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요기관의 납부 의사, 기관의 성격, 미납 횟수 및 규모 등에 대한 고려가 없고 구체적인 절차가 없으며 해제가 없어 영구적 처분의 성격이어서 실지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짐</p> <p>개선 지정 요건 명확화 및 절차 마련으로 수요기관 부담 감소 - 지정시 사전고지 절차 신설, 기관규모,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관 제외, 선납지정기간 두어 완료시 해제 가능</p> <p>조치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 개정</p>	'23.상
7	<p>부당이득 환수금 수요기관 환불을 국고귀속 (조달청 세입) 으로 개선 검토</p> <p>조달가격조사과 7208</p>	<p>현행 불공정 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수요기관에 환불 - 채권관리 및 소송수행주체의 중복·분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부당이득금의 환불대상(수요기관) 확정이 곤란 등 문제 발생</p> <p>개선 부당이득금 처리방식을 국고 귀속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소송 및 채권관리가 일원화(조달청)되고 회계처리가 단순화</p> <p>조치 내·외부 법률 자문 및 기재부 등 협의 후 조달사업법령 개정</p>	'23

VII



VIII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부록

조달현장 규제혁신과제 색인

88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MAS) 개선

가.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혁신조달운영과	070-4056-7530	6
2	혁신제품 쇼핑몰 등록 시 실적요건 폐지	구매총괄과	070-4056-7266	7
3	수요자 친화적인 다수공급자계약 규격운영	구매총괄과	070-4056-7266	7
4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 개선 검토	구매총괄과	070-4056-7266	7
5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서에 계약연장 허용 등 내용 기재	구매총괄과	070-4056-7266	8
6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MAS 공급 확대	쇼핑몰기획과	070-4056-6470	8

나. 다수공급자계약 운영제도 개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미리 주문된 납품도 물가변동 납품단가 조정에 반영	구매총괄과	070-4056-7266	9
2	미종결 납품요구 취소요청 절차 마련	구매총괄과	070-4056-7266	9
3	탄력적 계약조건으로 납품업체의 리스크 분담	쇼핑몰기획과	070-4056-6470	10
4	쇼핑몰제품 할인판매 횟수 추가 허용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0
5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연장 횟수 제한 해제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1
6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 판매 재개 허용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1
7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2
8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산정의 합리적 개선	구매총괄과	070-4056-7302	12
9	쇼핑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경감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3
10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3
11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 절차 자동화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4
12	단가계약 보증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유도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4
13	쇼핑몰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5
14	직생유효기간 갱신 후 판매중지 해제절차 간소화	구매총괄과	070-4056-7302	15
15	다수공급자계약 직접생산증명서 만료 시 제재 경감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6
16	다수공급자계약 연장요건 명확화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6
17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서 및 규격서 재정비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6
18	시스템 장비 물가변동 적기 반영을 위한 단가조정 주기 단축	쇼핑몰구매과	070-4056-7231	16

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합리화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지나친 가격경쟁 유발 요소 제거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7
2	쇼핑몰 2단계평가방식 통합·단순화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7
3	쇼핑몰 2단계경쟁 품질관리평가 감점범위 완화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8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8
5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제도 개선 검토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9
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시 선택평가항목 변별력 개선	구매총괄과	070-4056-7266	19

라. 종합쇼핑몰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등 간소화	전자조달관리과	070-4056-7325	20
2	물품 계약단가 조정신청 관련 시스템 개선	구매총괄과	070-4056-7266	20
3	쇼핑몰 주문 로봇처리 프로세스 구축	전자조달관리과	070-4056-6278	21
4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시 첨부파일 오류 개선	구매총괄과	070-4056-7266	21
5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시 입찰자격 시스템 개선	구매총괄과	070-4056-7266	22
6	대량구매 할인을 적용 금액 표기	구매총괄과	070-4056-7266	22
7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대상 관련 안내 개선	구매총괄과	070-4056-7266	22

2. 혁신제품 제도개선

가. 도입확대 및 편의성 제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추진	혁신조달과	070-4056-7023	26
2	혁신기술을 활용한 우수안전장비 도입	혁신조달과 혁신조달운영과	070-4056-7238 070-4056-7564	27
3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 절차 마련	혁신조달과	070-4056-7238	28
4	혁신제품 규격 추가 절차 개선	혁신조달과	070-4056-7023	28
5	혁신장터 이용자 편의성 제고	혁신조달운영과	070-4056-7121	29
6	혁신제품 규격 변경 시 복잡한 협의회 절차 간소화	혁신조달과	070-4056-7023	29
7	과제 발굴 경로 다변화로 다양한 혁신제품 발굴	혁신조달과	070-4056-7238	30
8	혁신제품 협업기관 지속 확대	혁신조달과	070-4056-7238	30
9	혁신제품 세부추진 일정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혁신조달과	070-4056-7023	30

나. 혁신제품 시범사업 확대운영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검토	혁신조달운영과	070-4056-7564	31
2	공공기관의 시범사용 판정기준 객관화	혁신조달과	070-4056-7530	31
3	혁신제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개선 기회 부여	혁신조달운영과	070-4056-7530	32
4	혁신조달 연계형 R&D지원, 시범구매 예산 증액	혁신조달과	070-4056-7347	32
5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매칭 강화	혁신조달운영과	070-4056-7564	33
6	혁신제품 시범구매 우대 대상 확대	혁신조달과	070-4056-7564	33

3. 기술개발 및 벤처기업 등의 우대제도 개선

가. 우수조달물품 제도개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국산 부품 사용 장려를 위한 규격서 수정 허용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83	36
2	우수제품 지정일 선택범위 확대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83	36
3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 강화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83	37
4	납품불이행이 없는 우수제품의 제재 경감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83	37
5	성능인증 기반 우수제품 안내 지원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83	37
6	신규 우수제품 기업에 대한 홍보체계 마련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83	38
7	우수제품 재계약 및 협업체 관련 제출서류 경감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83	38
8	우수조달물품의 수요기관 적극 안내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83	38

나. 창업·벤처기업 등의 우대제도 개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요건 면제	구매총괄과	070-4056-7302	39
2	장기 존속 여성기업 입찰가점 차별 제거	구매총괄과	070-4056-7302	40
3	벤처나라 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간 확대	혁신조달운영과	070-4056-7121	40
4	벤처나라 제품의 우대방안 검토	혁신조달운영과	070-4056-7121	41
5	약자기업인 소기업·소상공인 신인도 가점 개선	구매총괄과	070-4056-7302	41
6	창업·벤처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MOU추진	혁신조달운영과	070-4056-7121	42
7	창업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면제사유 상세 안내	구매총괄과	070-4056-7266	42
8	소상공인 우대제도의 교육 및 컨설팅 제공	공공조달역량개발원	070-4056-1522	42

4. 공사제도 합리화 및 편의성 제고

가. 시설공사제도 합리화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개선	시설총괄과	070-4056-7085	46
2	시설공사 낙찰가에 적정공사비 반영 강화	토목환경과	070-4056-7069	48
3	건설공사 기술경쟁 강화를 위한 기술형입찰 내실화	시설사업기획과	070-4056-7411	48
4	설계검토 자문위원 확대 및 공종별 전문분야 운영	설계예산검토과	070-4056-7429	49
5	상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입찰시 가점기준 개선	시설총괄과	070-4056-7587	49
6	설계검토 내실화 및 자문위원회 운영 개선	설계예산검토과	070-4056-7245	49

나. 시설공사 입찰의 편의성 제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표준화	예산사업관리과	070-4056-7563	50
2	입찰비용 절감을 위한 공사비산정 상세내역 공개	건축설비과	070-4056-7255	50
3	주요 시설자재 가격조사 방법 개선	건축설비과	070-4056-7255	51
4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 실적증명 간소화	시설총괄과	070-4056-7350	51
5	설계도서의 전자방식 제출 허용	설계예산검토과	070-4056-7429	52
6	시설공사 맞춤형 업체검색 메뉴 제공	시설총괄과	070-4056-6147	52
7	시스템을 이용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자동화	토목환경과	070-4056-6286	52
8	산업재해발생 신고를 위한 모바일앱 구축	공사관리과	070-4056-7301	53
9	나라장터를 통한 시설공사 계약 기술검토 보완 서류 접수 개선	시설총괄과	070-4056-7405	53
10	공사계약 입찰내역 작성 프로그램 개선	토목환경과	070-4056-7338	53

5. 물품·서비스·SW의 공공입찰 개선

가. 물품 구매제도의 합리화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현장소통을 위한 주요 품목별 실무협의체 운영	구매총괄과	070-4056-7265	56
2	적격심사 평가서류의 제출기한 일원화	구매총괄과	070-4056-7302	56
3	국방피복류 예정가격 현실화	국방조달지원과	070-4056-6324	56

나. 서비스·건설용역 관련 규제혁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운송용역계약 계약조건 변경 개선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24	57
2	건설용역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입찰감점 폐지	건설용역과	070-4056-7578	57
3	차량임대 서비스 진입요건 완화	서비스계약과	070-4056-7494	58
4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참가범위 확대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58
5	건설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간소화	건설용역과	070-4056-7578	59
6	이음장터 등록 확대 및 거래 활성화	서비스계약과	070-4056-7494	59
7	국민 안전·생활 밀접 분야 서비스 신상품 개발	서비스계약과	070-4056-7494	60
8	공간정보사업 협상계약 시 차등점수제 활용 권고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24	60
9	행사대행용역에서의 불합리한 사후정산요구 방지	서비스계약과	070-4056-7494	60

다. 소프트웨어·디지털서비스 분야 개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요건 완화	조사분석과	070-4056-8161	61
2	공공 IT·SW사업의 불합리한 과업변경 방지	정보기술계약과	070-4056-7299	61
3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62
4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3년) 선택방식으로 전환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63
5	AI기반 SW사업 발주지원 플랫폼 제공	정보기술계약과	070-4056-7299	63
6	상용SW 직접구매 사전검토 업무 전산화 추진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64
7	상용SW 등 신규 ICT상품 쇼핑몰 공급 확대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64
8	상용SW 직접구매 절차 효율화 추진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64

6. 심사평가 및 품질검사 분야 규제혁신

가. 입찰 심사 · 평가 제도개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조달청 평가위원 수요기관 공동 활용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24	68
2	협상계약 온 · 오프라인 혼합평가 신설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24	68
3	협상계약 시 수혜자 의견 반영한 평가 방식 도입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24	69
4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계약과	070-4056-7494	69
5	행사용역 분야 안전 · 재난관리 항목 평가 확대	서비스계약과	070-4056-7494	69
6	전시문화 사업 평가 시 기술등급평가로 개선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24	70

나. 품질 및 검사 분야의 편의성 제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도서지역 납품검사 방식 현실화	납품검사과	070-4056-8100	71
2	직접생산 위반여부 판단 시 시정기회 부여	조사분석과	070-4056-8161	71
3	납품검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이익제기 확대	납품검사과	070-4056-8100	72
4	규격미달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납품검사과	070-4056-8122	72
5	창업 · 벤처기업의 직접생산 협업 대상 확대	조사분석과	070-4056-8161	73
6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선납품(후검사) 제도 확대	납품검사과	070-4056-8100	73
7	직접생산 생산주체 자체기준 명확화	조사분석과	070-4056-8161	74
8	농공단지 수의계약 일반 제조물품 공장 실사 완화	구매총괄과	070-4056-7302	75
9	전문검사기관별 검사실적 편차 해소방안 마련	납품검사과	070-4056-8100	75
10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품질총괄과	070-4056-8021	75
11	조달물자 품질향상을 위한 MAS · 우수조달물품 표준규격 정비	품질점검과	070-4056-8062	75

7. 시스템·물품목록 등 기타 규제혁신

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서비스 이용 선택 자율화	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78
2	AI 챗봇을 이용한 고객 응대서비스 제공	차세대나라장터추진단	070-4056-6344	78
3	기업의 실적증명서 온라인 전송 서비스 확대	전자조달관리과	070-4056-7325	79
4	동영상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나라장터 안내	차세대나라장터추진단	070-4056-6344	79
5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 단순 실수 방지를 위한 안내 개선	구매총괄과	070-4056-7302	80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망 정보의 조달청 입찰등록 연계	조달등록팀	070-4056-7061	80

나. 공공물품 목록제도 및 절차 개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간급 수요물자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 도입	물품관리과	070-4056-7174	81
2	목록화 절차 간소화	물품관리과	070-4056-7174	82
3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변경 절차 단순화	물품관리과	070-4056-7174	82
4	조달현장에 맞는 물품 목록체계 도입	물품관리과	070-4056-7174	82

다. 기타 규제혁신

	과제명	담당	문의사항	페이지
1	수출유망기업 재지정시 단순변경사항 실태조사 면제	조달수출지원팀	070-4056-6451	83
2	수출유망기업 ODA사업 수행실적을 심사에 포함	조달수출지원팀	070-4056-6451	83
3	비축재고를 탄력 운영해 원자재 필요기업 지원	원자재비축과	070-4056-7032	84
4	해외조달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 축소	해외물자과	070-4056-7311	84
5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희망가격 정보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28	85
6	조달수수료 장기 미납 시 ‘선납기관 지정제도’ 개선 검토	조달회계과	070-4056-7048	85
7	부당이득 환수금 수요기관 환불을 국고귀속(조달청 세입)으로 개선 검토	조달가격조사과	070-4056-7208	85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편리하게!

발행인 | 조달청장 이종욱

편집인 | 조달청 전략조달과

발행일 | 2023년 3월

발행처 | 조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www.pps.go.kr

디자인·인쇄 | 청맥기획(042-487-2589)

Copyright © 2023 조달청

* 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